발 간 등 록 번 호
11-1360000-000992-10

2017년도 자체평가계획

2017. 8.

기 상 청

목 차

Ⅰ. 개요

1. '17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 3
2. 수립경과 ····· 5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체계 ····· 9
2.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11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13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17
2. 통합재정사업 ····· 25
3. 행정관리역량 ····· 26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29
2. 통합재정사업 ····· 32
3. 행정관리역량 ····· 36

Ⅴ. 자체평가 방법

1. 주요정책과제 ····· 41
2. 통합재정사업 ····· 44
3. 행정관리역량 ····· 47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51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51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 ····· 52
4. 평가결과 공유·확산 방안 ····· 53
5. 평가결과의 공개 ····· 53

※ 별첨 : 2017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 55

Ⅰ. 개 요

Ⅰ. 개 요

1 '17년도 자체평가 기본방향

기 본 방 향

1 자체평가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평가 신뢰도 제고

3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 및 환류 강화

1 자체평가 운영 개선을 통해 성과관리 효율성 제고

○ 정책 추진 단계별(계획, 집행, 성과 및 환류) 평가관리를 통해 정책 성과 및 품질 제고

○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한 주요정책 평가지표의 가중치(배점) 조정 및 평가항목 설정으로 평가 변별력 개선

○ 자체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시 난이도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을 반영하여 평가

※ '1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2.20): 표준편차 10점 이상 평가지표 60% 이상 구성

○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미흡사업 성과관리 개선대책)의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 반영 등 자체평가 부문간 연계 강화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평가 신뢰도 제고

○ 특정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적정성을 개선하고 평가의 전문성 확보

○ 분야별로 소위원회(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R&D사업)를 구성·운영하여 자체평가의 효율성·전문성 강화

- 재정 및 R&D소위원회 위원과 주요정책소위원회 위원 일부를 공동 활용하여 통합재정사업평가와 주요정책평가의 연계 강화

○ 민간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주기적·사전적 평가 관련자료 제공으로 자체평가의 충실성 제고

○ 자체평가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시 대면회의 실시 등을 통하여 소위원회별 운영 활성화

3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 및 환류 강화

○ 자체평가 결과 확정 전 이의신청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자체평가의 수용성 제고

○ 평가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미흡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결과보고서 등에 제시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개인 성과보수, 인사, 조직, 예산편성 등과 연계한 환류체계 운영으로 기관 성과창출과 선순환 구조 구축

2 '17년도 자체평가계획 수립 경과

일 정	수 립 경 과	비고
'17.2.20.	'1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통보	국무조정실
'17.2.2.~3.28.	'17년 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성과관리 TFT) 의견수렴	
'17.3.8.~3.15.	'17년 계획(안) 외부 성과관리 전문가 자문	
'17.3.8.~3.15.	'17년 계획(안) 자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실시	주요정책소위원회
'17.3.30.	'17년 기상청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자체평가총괄위원회
'17.3.31	**'17년 기상청 자체평가계획 수립**	
'17.6.19.	'1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 추가 지침 통보	국무조정실
'17.6.12.~8.28.	'17년 계획 수정을 위한 내부(성과관리 TFT) 의견수렴	
'17.8.7.~8.15.	'17년 계획 수정(안) 외부 성과관리 전문가 자문	
'17.8.7.~8.15.	'17년 계획 수정(안) 자체평가위원회 사전검토 실시	주요정책소위원회
'17.8.29.	'17년 기상청 자체평가계획 수정(안) 심의·확정	자체평가총괄위원회
'17.8.31.	**'17년 기상청 자체평가계획 수정 수립**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체계

□ 위원회 운영 기준

○ **(운영세칙)**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의결방법)**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체계

○ **정책·예산·행정에 대한 평가위원회 통합 관리·운영으로 분야별 전문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2개 위원회*, 4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자체평가총괄, 통합재정사업평가 위원회 **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재정사업, R&D사업 소위원회

– 재정 및 R&D소위원회 위원과 주요정책소위원회 위원 일부를 공동 활용하여 통합재정사업평가와 주요정책평가의 연계 강화

○ 위원회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의결

▪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심의·의결

–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 일반재정·정보화, R&D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심의·의결

▪ 일반재정·정보화, R&D사업 소위별 평가결과 자체평가총괄위원회 보고

○ 소위원회

- 주요정책 : 성과관리시행계획 검토, 주요정책 분야 평가
- 행정관리역량 : 인사, 조직, 정보화 분야 평가
- 재정사업 : 일반재정, 정보화 분야 예산 평가
- R&D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예산 평가

<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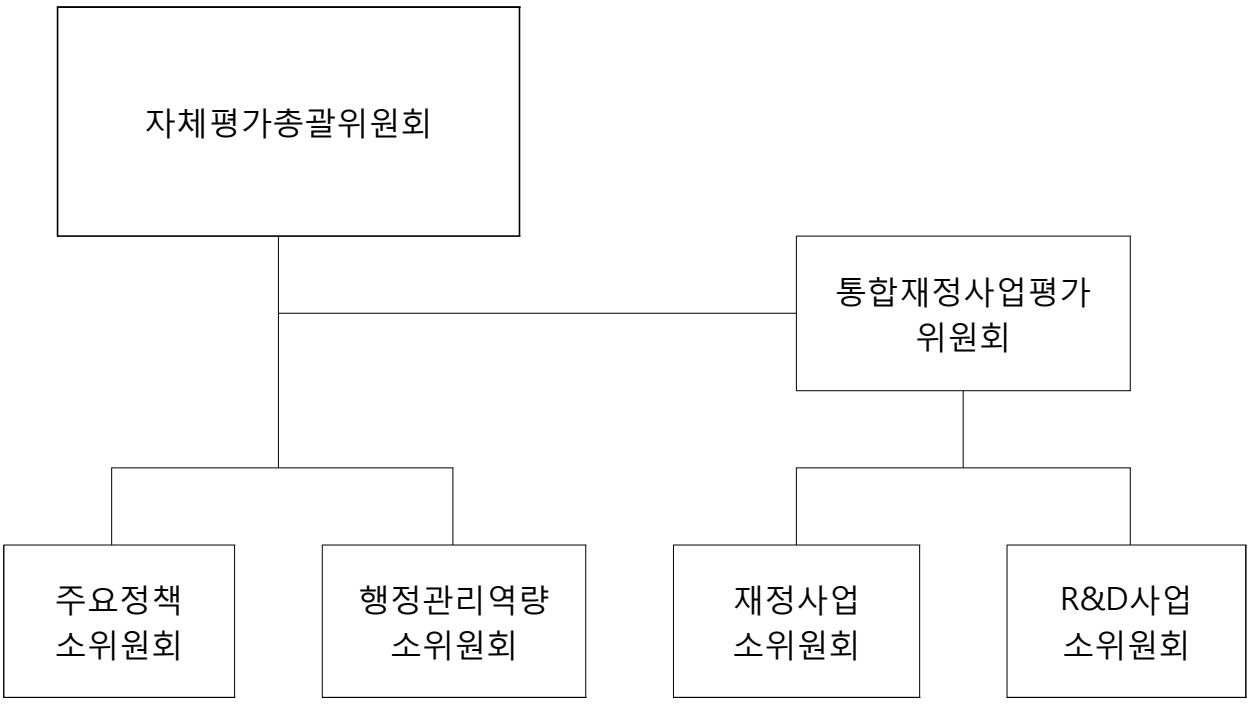

2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자체평가위원 현황(총 26명)

구분	성 명		소 속	직위	구 분						비고
					총괄	주요정책	통합재정	재정	R&D	행정관리	
외부	1	유정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2	김영수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		기상청,국세청
	3	김영신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위원		○					
	4	김은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팀장	○	○		○			
	5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		
	6	김준모	건국대학교	교수	○	○	○	●		○	기상청,국방부
	7	노명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					
	8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부장	○	○	○		●	○	기상청,권익위
	9	변순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본부장	○	○				○	
	10	봉선학	㈜티비엔에이(TBNA)	대표					○		
	11	박미옥	동국대학교	교수	○	○					
	12	안명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			
	13	연관희	한전전력연구원	부장		○		○			
	14	염성수	연세대학교	교수		○					
	15	유해영	단국대학교	교수	○	○	○	○		●	
	16	태원준	국민일보	부장		○					
	17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		○					
	18	이중우	인제대학교	교수	○	○					
	19	권원태	제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20	전현곤	㈜에이탑컨설팅	대표					○		
	21	정휘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		○			
	22	조민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		○					기상청,기재부
	23	최영은	건국대학교	교수					○		
	24	최충익	강원대학교	교수		○					
내부	25	당연직	기상청	차장	○		●				
	26	당연직	기상청	기획조정관	○		○				

(1) 2개 위원회, 4개 소위원회별로 26명의 자체평가위원 중복 참여

- 자체평가총괄위원회(10명),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5명), 주요정책(19명), 행정관리역량(4명), 재정사업(6명), R&D사업(6명)

(2) ● :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

○ 분야별 자체평가위원 구성 비율

– 위원 구성(총 26명) : 외부위원 26명(92.9%), 내부위원 2명(7.1%)

< 분야별 전문가 비율 >

외부위원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공무원
9명	10명	1명	-	4명	24명	2명
37.5%	41.6%	4.2%	-	16.7%	100%	

□ 위원회·소위원회별 구성 현황

구 분	위원장	위 원
자체평가 총괄위원회 (10명)	유정문	김은연, 김준모, 박중훈, 변순천, 박미옥, 유해영, 이중우, 차 장, 기획조정관
통합재정사업 평가위원회 (5명)	차 장	김준모, 박중훈, 유해영, 기획조정관
주요정책 소위원회 (19명)	유정문	김영신, 김은연, 김준모, 노명현, 박중훈, 변순천, 박미옥, 안명환, 연관희, 염성수, 유해영, 태원준, 이정원, 이중우, 권원태, 정휘철, 조민수, 최충익
재정사업 소위원회 (6명)	김준모	김은연, 유해영, 안명환, 연관희, 정휘철
R&D사업 소위원회 (6명)	박중훈	김영수, 김종선, 봉선학, 전현곤, 최영은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4명)	유해영	김준모, 박중훈, 변순천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 구성

○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성과평가총괄팀과 소위별 업무를 지원하는 평가지원팀으로 구성

구 분		역 할	팀원(직책)	연락처
성과평가 총괄팀		평가 총괄지원	창조행정담당관	02-2181-0322
			성과평가 담당사무관	02-2181-0332
소위별 평가 지원팀	주요정책 (공통지표 관리부서)	주요정책 소위원회 지원	예보정책 담당사무관	02-2181-0510
			관측정책 담당사무관	02-2181-0702
			기후정책 담당사무관	02-2181-0393
			기상서비스정책 담당사무관	02-2181-0850
			지진정책 담당사무관	02-2181-0763
			규제개혁 담당사무관	02-2181-0349
			정책홍보 담당사무관	02-2181-0356
	통합재정사업	재정사업 소위원회 지원 ※ 통합재정사업 총괄	재정사업 담당사무관	02-2181-0306
		R&D사업 소위원회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연구관	02-2181-0338
	행정관리역량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지원	조직 담당사무관	02-2181-0325
			인사 담당사무관	02-2181-0342
			정보화 담당사무관	02-2181-0411

□ 평가지원팀의 운영

○ **(성과평가총괄팀)** 성과평가업무 총괄 및 각 소위별 평가지원팀 관리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부문별 평가자료 관리·평가점검·지원
- 추진계획 대비 실적확인, 평가관련자료 취합·제출 등
- 자체평가자료 설명 및 위원별 요구사항 지원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활용 지원

○ **(소위별 평가지원팀)** 해당 분야의 평가업무 총괄 및 평가업무 지원

- 자체평가, 현장점검 등 일정관리
- 평가 관련자료 취합·정리 등
- 자체평가자료 설명 및 위원별 요구사항 지원
- 점검 및 평가 결과 환류 등

Ⅲ. 자체평가 대상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 **평가대상 :** 총 21개 국.소속기관, 34개 관리과제

※ 국·소속기관별 소관 관리과제를 통합하여 종합 평가

< 평가대상 세부현황 >

담당	관리과제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예보국	1. 예보체계 개선을 통한 방재업무 지원 강화	① 영향예보 기반구축률(%)	50	○ 영향예보 기반구축률(%) = (영향예보 기반 생산시스템 구축 건수)/(기상현상 영향예보 기반생산시스템 목표 건수(8건))) x 100
	2. 예보기술 고도화로 전문성 강화	① 선진예보기술 현업화 건수(건)	3	○ 당해연도 선진예보기술 현업화 건수
		② 태풍 진로예보 거리오차(km)	206	○ 당해연도 태풍별 72시간 진로예보 평균 거리오차들의 중앙값 - 태풍별 72시간 진로예보 평균 거리오차 = $\frac{1}{N}\sum_{i=1}^{N}(F_i - O_i)$ * N: 태풍별 예보 횟수, F: 72시간 예보된 태풍 중심위치, O: 분석된 태풍 중심위치
기후과학국	3. 위험기상 실질적 대응을 위한 해양기상 영향예보 기반마련	① 해양·항만 파랑예측모델 정확도 도달률(%)	94.3	○ 해양·항만 파랑예측모델 정확도 도달률 = $\frac{RMSE_{2018목표(0.33m)}}{RMSE_{당해연도실적}} \times 100$ * RMSE = $\sqrt{\frac{1}{N}\sum_{i=1}^{N}(F_i - O_i)^2}$ (예측횟수: N, 예측값: F, 관측값: O)
지진화산센터	4. 최적의 지진관측망 구축 및 분석기술 고도화	①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활용 조밀도(km)	22.0	○ 지진조기경보관측망 활용상 조밀도(km) = $\sqrt{99{,}720/지진조기경보\ 활용\ 관측망\ 수}$ * 99,720(km^2) : 한반도 내륙지역의 면적 (단, 북한 제외) * 지진조기경보 활용 관측망 수 : 유관기관 관측자료를 포함하여 지진조기경보분석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관측 자료

담당	관리과제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5. 신속한 정보 전달체계 확보 및 정보 활용 극대화	① 지진정보서비스 만족도(점)	43.2	○ 지진정보서비스 만족도(점) = 설문조사 결과(7점 척도)에 따른 종합 만족도 점수 * 대상자 : 기관의 담당자 대상 (모집집단 : 100명 이상)
관측 기반국	6. 차세대 기상관측망 운영체계로 관측업무 개선	① 기상청 기상관측장비 장애시간(시간)	180.6	○ 기상관측장비 장애시간 = ∑{(관측 부문별 장애시간) × 가중치} - 가중치 : 지상(35%), 해양(40%), 고층(25%) * 가중치는 총예산대비 각 부문별 예산비율로 정의(관측장비의 중요도는 같음) * 관측 부문별 주요장비 연간 장애시간 = {장애율(%) × (365일 × 24시간)} ÷100
		② 기상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율(%)	38.1	○ 기상장비 핵심부품 국산화율(%) = $\sum_{i=1}^{N}$ 개별 핵심부품 국산화 비율 ÷ 전체 장비 수(31종) * 핵심부품: 장비를 이루고 있는 부품 중 원가 비중이 큰 부품(센서)
	7. 정보자원 가용률 향상으로 기상정보서비스 품질 향상	① 정보인프라 운영관리 서비스 가용률(%)	99.79	○ 서비스 가용률(%) ={총 서비스 기준시간(분) - 서비스 장애시간(분)} ÷ 총 서비스 기준시간(분)×100 * 계획에 의한 운영관리서비스 중지 시 장애시간 제외(공사, 이전, 부품 교체시) * 외부요인(천재지변, 연동 시스템 비정상 작동 등)에 의한 장애시간 제외
		② 슈퍼컴 서비스 만족도(점)	86.8	○ 슈퍼컴 서비스 만족도(점) = (①슈퍼컴 사용자 만족도 × 0.8) +(②슈퍼컴 사용자 기술지원 충족도 × 0.2) * 가중치는 조사대상 표본수의 비율로 정의(중요도는 같음)
국가 기상 위성 센터	8. 차세대 후속 기상위성(천리안 2A) 개발	① 기상탑재체 핵심품목 국산화율(%)	42.9	○ 기상탑재체 핵심품목 국산화율 = (핵심품목 국산화 건수÷총 핵심품목 국산과 건수)×100 * 핵심품목이란 위성개발에서 발사·운영까지 국내기술로 미 확보된 대상 품목을 말함
		② 기상.우주기상 자료처리 기술 평균 국산화율(%)	81.6	○ 기상.우주기상 자료처리기술 국산화율 = (기본산출물 개발기술 확보율 + 부가산출물 개발기술 확보율 + 우주기상 산출물 개발기술 확보율) ÷ 3 * 개발기술 확보율 = (개발기술 확보 누적건수 ÷ 총 개발필요 기술 건수)×100

담당	관리과제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9. 위성자료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기상위성 서비스 강화	① 위성영상 적시 제공률(%)	97.5	○ 위성영상 적시 제공률 = (목표 시간 내 정상 표출 건수÷기상위성 관측자료 총 수집 건수)×100 * 측정대상 - 국내위성(1개) : 천리안 - 국외위성(6개) : NOAA-15/18/19, Metop-A/B, S-NPP
		② 위성기술 현업 적용 건수(건)	6	○ 위성기술 현업적용 건수 = 당해연도 현업화 기술로 인정된 실적 건수 * 현업화는 "기상위성시스템 운영관리 규정"이 제정됨(2015.9)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시험운영을 거쳐 검증결과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짐
기상레이더센터	10. 레이더 통합관측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운영기술 표준화	① 이중편파레이더 통합관측망 확충률(%)	59.1	○ 이중편파레이더 통합관측망 확충률 = $\frac{a}{22}\times 100$ (%) * a : 부처 간 이중편파레이더자료 공유를 통한 통합영상 제공 대수 * 22대 : 2020년 3개 부처(기상청·국토교통부·국방부) 이중편파레이더 총 대수
		② 범부처 레이더 통합관측 운영기술 개선 수(건)	2	○ 범부처 레이더 통합관측 운영기술 개선 수 = 기상청 또는 기상청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중편파레이더 하드웨어 운영 기술에 대하여 당해연도 개선한 실적 수
	11. 범부처 레이더 통합영상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① 레이더자료 현업화 건수(건)	3	○ 레이더자료 현업화 건수 = 당해연도 레이더 현업운영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 건수
수치모델링센터	12. 이음새 없는 기상·기후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현업 수치예보시스템 고도화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현업 대비 예측성능비(%)	93.1	○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현업 대비 예측성능비(%) $=(B\div A)\times 100$ * A : 현업 전지구예보모델의 500hPa 지위고도 5일 예측오차의 이상상관계수, B: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500hPa 지위고도 5일 예측오차의 이상상관계수
	7. 첨단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기상정책 지원 서비스	① 동아시아지역 기온예측 정확도 개선율(%)	3.2	○ 동아시아지역 기온예측 정확도 개선율(%) $=[(A-B)\div A]\times 100$ * A: 현업 모델의 2일(48시간) 예측오차, B : 모델 개선 후 2일 (48시간) 예측오차 * 동아시아 영역 850hPa 기온 2일 예측기준
기상서비스진흥국	14.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① 기상기업 매출액(억원)	1,419	○ 기상기업 매출액(억원) = ∑(당해연도 발표 기상사업 등록기업 매출액)
		② 기상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수(건)	365	○ 기상데이터 민간활용사례수(건) = ∑ (실시간 기상데이터 활용사례 건수)
	15.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고도화 및 활용 확산	①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률(%)	20.0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용률(%) = (당해연도 융합서비스 활용건수÷최근 3년간 융합서비스 개발건수) ×100

담당	관리과제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수도권 지방 기상청	16. 기상기후서비스 활용 확대를 통한 수도권 기상재해 예방	① 방재·기후 서비스에 대한 추천 고객지수	16	○ 방재·기후서비스에 대한 추천 고객지수(NPS) = (추천고객 수-비추천고객 수)÷응답자 수×100
		② 수도권지역 호우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시행률(%)	15	○ 수도권지역 호우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시행률(%) = (B ÷ A) × 100 * A : 수도권청 관할 지자체 수(33개 지자체), B : 호우영향예보 시범서비스 제공된 지자체수
부산 지방 기상청	17. 유관기관 의사결정 지원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활용성 제고	① 지역기상기후서비스 유관기관 정책반영 건수(건)	10	○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추진한 서비스가 유관기관 정책에 반영된 건수
		② 부산·울산·경남지역 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40	○ 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 $\{\sum_{i=1}^{N}$(임계값 설정이 완료된 지자체수÷부산지방청 관할 지자체 수)÷$N\}\times 100$ * N :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 5종류(호우, 대설, 강풍, 폭염, 한파)
		③ 지진관측망 조기 확충사업 지원을 위한 사전 설치 부지 확보율(%)	105	○ 지진관측소 설치부지 확보율(%) = (지진관측소 사전 설치부지 확보 수 ÷ 신설·교체 계획 지진관측소 수) ×100
광주 지방 기상청	18. 취약계층 맞춤형 기상기후융합서비스 구현	① 취약계층 기상기후정보 만족도(점)	78.0	○ 기상기후정보 만족도 = (광주전남 안전·지식정보 취약계층 만족도 × 0.5) + (유관기관 만족도 × 0.5) * 리커트 7점 척도 이용
		② 기상기후서비스의 지역 지자체 정책반영 건수(건)	6	○ 기상기후서비스의 지역 지자체 정책반영건수
		③ 기상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40	○ 관할 기초 지자체의 위험기상에 대한 영향정도의 임계값 설정률 $= \{(\sum_{i=1}^{N} \frac{\text{임계값 설정이 완료된 지자체 수}}{\text{광주청 관할 지자체 수}}) \div N\} \times 100$ * N : 대상이 되는 기상현상 5종류(호우, 대설, 폭염, 한파, 강풍) 위험기상

담당	관리과제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강원 지방 기상청	19. 기상기후정보를 활용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① 강원지역 기상산업 고용증가율(%)	30	○ 강원지역 기상산업 고용증가율(%) $= \frac{\text{당해년도 - 전년도 상용근로자 수}}{\text{전년도 상용근로자수}} \times 100$ * '16년 고용인원: 13명 * 증가율: 17년 30%, 18년 35% ※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을 받는 자
		② 대설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10	○ 대설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 \frac{\text{임계값 설정이 완료된 지자체 수}}{\text{강원청 관할 지자체 수}} \times 100$
대전 지방 기상청	20. 지역 수요를 반영한 기상기후서비스 확대	① 지역기상기후서비스 유관기관 정책반영 건수(건)	12	○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업무에 기상기후서비스가 활용된 건수
		② 호우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53	○ 호우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 (임계값 설정이 완료된 지자체 수/대전지방기상청 관할 지자체 수) × 100 * 관할 기초지자체 수: 17개 시·군
제주 지방 기상청	21. 고객지향형 기상정보 서비스로 도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① 연안바다 해상활동 가능률(%)	15	○ 연안바다 해상활동 가능률(%) A = (C-B)/C × 100 * A : 연안바다 해상활동 가능률, B : 제주도 연안바다 총 특보지속시간, C : 제주도 국지해상특보구역 총 특보지속시간
		② 지역기상기후서비스 유관기관 정책반영 건수(건)	7	○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업무에 기상기후서비스가 반영된 건수
대구 기상 지청	22. 지역민 안전과 생활편익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가치 확대	① 지역기상기후서비스 유관기관 정책반영 건수(건)	11	○ 관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업무에 기상기후서비스가 활용된 건수
		② 지역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활용만족도(점)	79.6	○ 지역맞춤형 기상기후정보 활용만족도 * 리커트 7점 척도 만족도 설문조사, 7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전체 응답자의 평균점수로 만족도 산출
전주 기상 지청	23. 전북지역 기상재해 저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강화	①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활용 만족도(점)	74.3	○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활용 만족도 = [∑{(응답치-1)÷(척도-1)×100}]÷응답수 * 측정대상 : 4개 분야(영향예보, 방재기상, 해양위험기상, 농업인기상정보)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실수요자(지자체, 민간기관, 지역민)
		② 영향예보를 위한 영향도 임계값 설정률(%)	50	○ 영향예보를 위한 영향도 임계값 설정률(%) = (B÷A)×100 * A : 14개 시·군, B : 임계값 설정 완료 지자체 수 * 기상현상 요소(1) : 대설

담당	관리과제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청주 기상 지청	24. 지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기상서비스 활용가치 제고	① 지역기상기후서비스의 유관기관 활용 건수(건)	6	○ 유관기관이 기상기후서비스를 지역민 서비스에 활용한 건수 * 유관기관 : 충북 소재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 서비스분야 : 지역 주력산업 분야 * 활용 기준 가. 유관기관의 공식홈페이지, 공식 SNS 등을 통해 지역기상기후서비스가 지역민에게 도달된 경우 나. 대국민 대상 교육자료 등 정책적으로 활용된 경우 다. 하나의 개발된 서비스는 제공횟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산출
		② 도로 안개 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30	○ 도로 안개 영향예보 임계값 설정률 $= (\frac{\text{임계값 설정이 완료된 노선 수}}{\text{충북지역 국도 노선수}}) \times 100$ * 국도 노선 임계값 설정 완료 여부 가. 분석지역 : 충북지역 국도 노선(총 19개/고속국도 6개, 일반국도 13개) 나 . 분석기간 : '11 ~ '15년(5년) 다. 임계값 설정 기준 : 법·제도, 사고사례, 도로환경, 교통정보 기반 라. 분석내용 - 재해DB 및 기상기후 통계자료, 지역 유관기관 자문 및 연구논문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상요소와 도로 재해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재해위험 임계값 산정
항공 기상청	25. 항공기상 인프라 강화를 통한 정보 정확도 향상	① 공항 예·경보 정확도(%)	83.6	○ 공항 예·경보 정확도 = 공항예보 정확도[1](50%) + 공항경보 정확도[2](50%) * 1) Σ공항별 예보정확도 ÷ 발표공항 수(7개) * 2) Σ공항경보 평가점수 ÷ Σ경보 발표건수 【하위산식】 · 공항별 예보정확도 = Σ(월별 공항별 예보정확도÷총월수) · 공항경보 평가점수 = 위험기상 발생유무(70%)+선행시간(30%) · 경보발표건수 = 발표된 건수 + 미발표 건수 · 공항예보 평가요소 : 풍향, 풍속, 시정, 운고, 운량 · 공항경보 평가요소 : 뇌전, 대설, 강풍, 운고, 저시정, 호우

담당	관리과제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26. 수요자 공감 선진 항공기상서비스 창출	① 수요자 활용 콘텐츠 만족도(점)	80.1	○ 수요자 활용 콘텐츠 만족도 = (정보 제공 형태 만족도×a) + (정보 콘텐츠 내용 만족도×b) + (고객 서비스 만족도×c) + (홈페이지 기능구현 만족도×d) 단, a+b+c+d = 1 【하위산식】 · 가중치 a, b, c, d : 각 평가차원에 대한 세부항목차원의 구성비율과 응답비율의 합에 대한 백분율 · 조사대상 : 2017.1월~12월까지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이용 고객 300명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
기후과학국	27 고품질 기후·기후변화 정보 제공 확대로 국가 정책지원 강화	① 기후변화감시정보 서비스 제공률(%)	22.9	○ 기후변화감시정보 서비스 제공률 = {기후변화감시정보 서비스 실시 건수/핵심기후변수 최종 서비스 건수(35건)}×100
	28. 선진 기후예측정보 생산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기후서비스 향상	① 장기예보 서비스 활용 만족도(점)	81.3	○ 장기예보 서비스 활용 만족도 백분율을 점수화하여 산출 =[∑{(응답치-1)÷(척도-1)×100}]÷응답수
		② 수문기상정보 활용률(%)	70.4	○ 수문기상정보 활용률(%) = $\frac{\text{사용자수}}{\text{총가입자수}} \times 100$ * 설문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온라인 및 면접 설문조사 실시
기획조정관	29. 국제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 국제활동 증진	① 수혜국 이해관계자 만족도(점)	83.3	○ 수혜국 이해관계자 만족도(점) = {(응답결과-1)÷(측정척도-1}×100 * 대상자 : 프로젝트사업 대상국 이해관계자 (당해연도 청에서 수행하는 사업) * 측정척도: 7점척도 * 방법: 현장 설문조사
국립기상과학원	30. 첨단 기상관측으로 기상재해 경감기술 선진화	① 전지구 파랑예측모델 예측정확도 개선율(%)	4	○ 전지구 파랑예측모델 예측정확도 개선율(%) = ((A-B)÷A)×100 * A : 현업 파랑모델 72시간 예측 유의파고 RMSE, B : 개선 중인 파랑모델의 72시간 예측 유의파고 RMSE

담당	관리과제	성과지표	'17년 목표치	측정방법 (측정산식)
	31. 기후 감시 및 예측능력 강화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① 지구시스템모델 기반 기후변화시나리오 산출 실적(건)	1	○ 기후변화 시나리오 산출건수 - 17년/1건, 18년/4건, 19년/6건, - 20년/2건, 21년/2건
	32.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기후 정보의 가치 창출	① 현업화기술 품질평가 평균점수(점)	77	○ 현업화기술 품질평가 평균점수 = Σ (개별 현업화 목표에 대한 평가점수) ÷ 현업화 개수 * 현업화 심의위원회 구성: 내·외부위원 10명 이상(기상청 및 외부위원 비율 80% 이상) * 평가방법 : 관리과제를 대표하는 주요 실용화 과제의 현업화 달성도에 따른 점수 부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33.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전문인력 육성	① 예보교육 현업적용도(점)	85.0	○ 예보교육 현업적용도 = {(평균현업적용도-1)÷(척도항목수-1)}×100 * 평균현업적용도=(교육이수자점수+동료평가점수+부서장평가점수)÷3
	34.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을 통한 기상과학 문화 확산	① 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 만족도(점)	89.2	○ 만족도(점) = (기상업무종사자만족도 × 0.5) + (대국민 기상교육 만족도 × 0.5) * 만족도 = ∑(척도별 가중치×척도별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 - 조사대상: 교육 수료자 - 조사방법: 수료 후 현장에서 설문조사 - 산출방법: 7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기관: 외부(사업수행업체)
		② 고품질 교육 제공률(%)	56.0	○ 고품질 교육 제공률 = (만족도 91.7점 이상 과정횟수 ÷ 전체 과정횟수) ×100 * 만족도=∑(척도별 가중치×척도별 응답자수)/전체응답자수 - 조사대상 : 대국민 교육 수료자 - 조사방법 : 수료 후 현장 설문조사 - 산출방법 : 7점 척도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기관 : 외부(사업수행업체)

□ 평가 제외 : 해당 없음

2 통합재정사업

□ 평가 대상

○ 2016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전체

* 기본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단위 : 개)

구 분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수											
	전체(A+B+C)			일반재정(A)			정보화(B)			R&D(C)		
	계	평가대상	평가제외	계	평가대상	평가제외	계	평가대상	평가제외	계	평가대상	평가제외
'16년도 성과계획서상 단위사업 수	23	20	3	13	11	2	4	4	0	6	5	1
'17년 평가계획 사업	23	20	3	13	11	2	4	4	0	6	5	1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연번	회계	분류	단위 사업명	'16예산 (억원)	'17예산 (억원)	과제코드	비고
1	일반회계	일반재정	국가태풍센터 운영	12	11	Ⅰ-1-일반재정(1)	
2	일반회계		지상기상관측	149	149	Ⅰ-2-일반재정(1)	
3	일반회계		고층기상관측	119	84	Ⅰ-2-일반재정(2)	
4	일반회계		지진관측	81	203	Ⅰ-2-일반재정(3)	
5	일반회계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58	72	Ⅱ-1-일반재정(1)	
6	일반회계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14	-	Ⅱ-1-일반재정(2)	
7	일반회계		해양기후 정보 생산 및 제공	111	118	Ⅱ-1-일반재정(3)	
8	일반회계		기상산업 진흥	120	121	Ⅲ-1-일반재정(1)	
9	일반회계		항공기상장비보강 및 운영	42	37	Ⅲ-2-일반재정(1)	
10	일반회계		국제기상협력 및 선진기술 습득	49(16)	50(17)	Ⅳ-1-일반재정(1)	(의무지출)
11	일반회계		교육훈련 및 대국민 기상인식 제고	39	37	Ⅳ-1-일반재정(2)	
12	일반회계	정보화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76	76	Ⅰ-1-정보화(1)	
13	일반회계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409	425	Ⅰ-2-정보화(1)	
14	일반회계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38	34	Ⅲ-1-정보화(1)	
15	일반회계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18	16	Ⅲ-2-정보화(1)	

연번	회계	분류	단위 사업명	'16예산 (억원)	'17예산 (억원)	과제코드	비고
16	일반회계	R&D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89	-	I-1-R&D(1)	
17	일반회계		선진기상기술개발	96	173	II-2-R&D(1)	
18	일반회계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240	235	II-2-R&D(2)	
19	일반회계		기상관측위성개발	782	421	II-2-R&D(3)	
20	일반회계		기상 See-At 기술개발	221	230	II-2-R&D(4)	

□ 평가 제외

평가제외 단위사업			'16예산 (억원)	과거 평가실시 연도	제외 사유
과제코드	사업명	사업단위			
II-1-R&D(1)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단위	77.5	미실시	R&D 및 일몰대상 평가
IV-2-일반재정(1)	청사 시설 개선	단위	157.94	미실시	청관사 관리 부대사업
IV-2-일반재정(2)	청사	단위	73.11	미실시	국유재산관리기금 청사 신·증축 사업

3 행정관리역량

□ 평가 대상

○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에 대한 기관 내부 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평가지표 설정 및 평가운영 원칙

○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운영 체계화

-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 부문별 소위원회 운영 및 대면평가 실시
- 평가결과가 개인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7등급 적용

○ 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실시

- 새 정부 국정기조, 국정과제 등과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반영하고, 국정현안 품질제고 노력 등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평가
-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정책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기관 업무추진 상 중요도에 따른 평가비중 부여

○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 반영 및 변별력 개선

- 자체평가의 관대화 방지를 위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시 난이도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성 반영하여 평가

※ '17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표준편차 10점 이상 평가지표 60% 이상 구성

○ 자체평가 부문간 연계 활성화

- '주요정책추진' 부문 평가시 '통합재정사업' 부문의 평가결과(미흡사업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 의견수렴 반영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

□ 주요 변경내용

○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주요정책추진'의 평가지표(계획, 집행, 성과 및 환류) 총 13개에 대한 평가배점 조정

▪ 평가지표 중요도에 대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배점 재설정

* AHP(계층분석기법) : 성과지표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쌍대비교 하여 중요도를 결정

□ 평가항목 체계 및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부문 (가중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
주요 정책 추진 (100%)	계획 (35점)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7점)	○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수준 ○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7.5점)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대표성 ○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 측정방식의 명확성, 객관성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6.5점)	○ 대내외 분야별 환경 분석의 적절성 - 산업경제, 사회안전, 복지, 환경, 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환경조사와 시사점 도출 -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대응방안 마련의 충실성
		의견수렴의 적절성 (6점)	○ 수혜자, 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 등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위원회 등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노력도
		계획의 충실성 (8점)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계획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판단 - 사전조사, 현장 의견수렴, 정책분석 결과 등의 계획 반영 - 계획 추진 상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반영 - 타 부처 및 청내 국·소속기관 수준의 협업

부문 (가중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기준
	집행 (25점)	추진일정 충실성 (7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성과지표 달성도 (10.5점)	○ 정량평가 - 성과목표 지표 또는 대표지표(난이도 평가대상) 달성도 - 관리과제 또는 보조지표 성과지표 달성도
		전략적 대응성 (7.5점)	○ 모니터링 실적 및 전략적 대응성
	성과 및 환류 (40점)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2.5점)	○ 목표한 성과 발생 여부 - 과제수행 주요성과,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등 - 성과가 고객 또는 대국민에게 미친 파급효과 ○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국·소속기관의 주요 활동 및 성과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6점)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및 성과
		상위정책 기여여부 (6점)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기여여부
		향후 기대효과 (6점)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 향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9.5점)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 미흡, 개선, 보완사항 발굴 및 이를 통한 기대효과 제시

2 통합재정사업

□ 평가지표 설정 원칙

○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평가 지표로 간소화

- 평가대상 확대에 따른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업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의 간소화

  * (종전) 관리, 결과 단계의 4개 지표 → (현행) 관리, 결과 단계의 3개 지표

- 일반재정·정보화, R&D 사업의 평가지표를 통합하여 공통평가지표로 사용하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성화지표 가미

□ 주요 변경내용

○ 평가대상을 전체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으로 확대

※ ('15년 회계연도) 전체 재정사업의 50% → ('16년 회계연도) 전체 재정사업

-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및 전략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규모'와 '사업 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상대평가 실시

※ (1) 일반재정·정보화(15개) 사업: 예산 규모 및 사업수 기준 평가
(2) R&D(5개) 사업: 사업수 기준 평가

  * 정성적인 평가를 시행하였음에도 예산규모와 사업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상대평가 기준 변경 가능

○ 분야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하여 분야별로 "우수" 또는 "미흡"의 상대평가 비율은 50% 초과 금지

○ 평가지표의 배점 조정

2016년

단계	평가 지표	배점		
		일반재정	정보화	R&D
관리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0	20	-
	2.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20	20	20
결과	3.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40	40	40
	4. 사업의 성과는 우수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은 효과적이었는가?	20	20	40
가점	(공통) 성과지표를 결과지표로 설정	3	3	3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4	0	-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0	4	-
	(R&D) 혁신도약형 사업에 대한 제도 마련·수행여부	-	-	1
	(R&D) 우수성과 100선 선정 여부, 세계적 수준의 우수성과 창출	-	-	2
	(R&D) 과제평가의 질적 지표 활용율	-	-	1
합 계		107	107	107

2017년

단계	평가 지표	배점	
		일반재정·정보화	R&D
관리	(일반재정·정보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30	-
	(R&D).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30
결과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50	50
	(일반재정·정보화)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20	-
	(R&D) 사업이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	20
가점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	4	-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혁신 성과	4	-
	(R&D) 성과지표를 질적지표로 설정한 경우	-	4
합 계		104	104

□ 평가항목 체계 및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table>
<tr><th colspan="2">평가단계 및 평가지표</th><th>배점</th><th>측정방법</th></tr>
<tr><td rowspan="2">관리
(30점)</td><td>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td><td>30점</td><td>□ (일반재정·정보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table>
<tr><td>답변</td><td>“아니요”</td><td>“어느 정도”</td><td>“상당한 정도”</td><td>“예”</td></tr>
<tr><td>배점</td><td>13～17</td><td>18～22</td><td>23～27</td><td>30</td></tr>
</table>

□ (R&D) 집행실적,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15점)
<table>
<tr><td>답변</td><td>“아니요”</td><td>“어느 정도”</td><td>“상당한 정도”</td><td>“예”</td></tr>
<tr><td>배점</td><td>6～8</td><td>9～11</td><td>12～14</td><td>15</td></tr>
</table>
○ 사업 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을 평가하여 3단계로 점수 부여(15점)
<table>
<tr><td>답변</td><td>“아니요”</td><td>“어느 정도”</td><td>“예”</td></tr>
<tr><td>배점</td><td>7～9</td><td>10～12</td><td>13～15</td></tr>
</table>
</td></tr>
<tr><td rowspan="2">결과
(60점)</td><td>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td><td>50점</td><td>□ (일반재정·정보화) 성과목표의 적극성 및 목표의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o 목표의 적극성에 따라 만점 기준을 50/48/46점으로 구분
o 적극성에 따른 만점기준에 목표달성률(목표대비 실적)을 곱하여 최종점수 산정

<table>
<tr><td>답변</td><td>매우적극</td><td>적극</td><td>보통</td></tr>
<tr><td>배점</td><td>50</td><td>48</td><td>46</td></tr>
</table>

※ 성과지표별 점수 = 목표의 적극성 점수 × 목표달성률

□ (R&D) 사전에 확정된 성과계획서 점검 결과 확인
o 2016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계산
※ 성과지표별 점수 = 50점 × 지표가중치 × 달성률 × 성과지표 적절성</td></tr>
<tr><td>(일반재정·정보화) 사업의 성과는</td><td>20점</td><td>□ (일반재정·정보화)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부처</td></tr>
</table>

<table>
<tr><td></td><td>우수한가?
(R&D) 사업이 상위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td><td></td><td>특성에 적합한 우수성 기준과 배점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 자체 기준: 외부기관의 평가 여부 및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자체 기준: 4단계 배점 방법 >
<table><tr><td>답변</td><td>“아니요”</td><td>“어느 정도”</td><td>“상당한 정도”</td><td>“예”</td></tr><tr><td>배점</td><td>5～9</td><td>10～14</td><td>15～19</td><td>20</td></tr></table>
□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가 상위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도를 평가
○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 핵심성 평가
○ 제출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에서 제시한 성과의 핵심성 점수를 인정
※ 최종 점수 : 핵심성 배점 X 근거자료의 타당성 (점수 인정%)</td></tr>
<tr><td rowspan="3">가점</td><td>(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td><td>4점</td><td>□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확인</td></tr>
<tr><td>(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td><td>4점</td><td>□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비용절감 또는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업무·대민서비스 개선 여부를 확인</td></tr>
<tr><td>(R&D) 성과지표를 질적지표로 설정한 경우</td><td>4점</td><td>□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성과지표를 질적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확인
○ 성과계획서 점검 결과, 질적 성과지표로 인정받은 지표의 가중치가 전체의 0.6 이상인 경우</td></tr>
</table>

3 행정관리역량

□ 평가지표 구성방향

○ 선택지표 항목을 도입하여 부처별 업무와 기능에 적합한 지표를 선택하여 관리·평가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 (추진배경) 정평위('16.3.) 개선의견 반영("부처의 업무와 기능을 고려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 필요")

< 선택지표 항목(pool) >

* **(조직)** ①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및 활용노력도 ②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 ③국민디자인단을 통한 국민 소통·협업 정도, ④국민 소통·협업을 통한 정책 개선
* **(인사)** ①상시학습 이수비율 ②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③전문직위 지정 비율
* **(정보화)** ①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도입 실적, ②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률

- 기관별로 선택한 지표 개수 차이에 따른 유·불리 해소를 위해, 선택한 지표의 득점률을 활용하여 선택지표 항목 최종점수 보정

○ 평가의 일관성 및 부처 부담 경감을 위해 전체적으로 현행 지표를 유지하되, 일부지표 신설(5개)·삭제(2개) 및 보완

- **(조직)**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표 신설
- **(인사)** 평가제외 기관이 많고 평가 실효성이 낮은 지표 삭제
- **(정보화)** 변별력이 없어 평가 실효성이 낮은 지표 삭제 및 정보화 사업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지표 신설

□ 평가항목 체계 및 평가지표별 측정 방법

분야	2016년		2017년	
	평가지표	측정기준	평가지표	측정기준
조직 (35)	①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18점)	①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 ②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 ③ 조직관리역량 강화 및 정부기능분류 시스템 관리 충실성 가.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및 활용 노력도 나.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 관리 수준	①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18점)	① 행정기관위원회 운영실적 ② 정부 기능분류(BRM) 및 조직정보 관리 수준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 <선택지표> ④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및 활용노력도 ⑤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
	②국민 소통·협업 (17점)	① 정책현장, 국민과 소통·협업 정도 ②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③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②국민 소통·협업 (17점)	①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②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선택지표> ③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국민 소통·협업 정도 ④ 국민 소통·협업을 통한 정책 개선
인사 (30)	①효율적인 정부인사 운영 (30점)	① 상시학습 및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가. 상시학습 이수비율 나.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가. 유연근무 활용실적 나. 연가사용 활용실적 다. 초과근무 감축 실적 ③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관리 가. 필수보직기간 준수실적 나. 전문직위 지정 비율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달성도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 나. 시간선택제 채용실적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①효율적인 정부인사 운영 (30점)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가.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추진노력도 나. 초과근무 감축 실적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성과 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성과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 공무원 확대 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실적 <선택지표> ⑥ 상시학습 이수비율 ⑦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⑧ 전문직위 지정 비율
정보화 (35)	①편리한 전자정부 구현 (18점)	①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가. 정보화 추진역량 수준 나.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수준 다.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 ②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 ③ 정보화사업 법제도 준수 수준	①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20점)	① 효율적인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 가.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 나. 정보화 기획 및 투자관리 수준 다. 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수준 ②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확립 가.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 ③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 <선택지표> ④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도입 실적 ⑤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적용률
	②사이버 안전수준 강화 (17점)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②사이버 안전수준 강화 (15점)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④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Ⅴ. 자체평가 방법

Ⅴ. 자체평가 방법

1 주요정책과제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및 주요정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주요정책 소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의결

– 주요정책 소위원회 : 자체평가 대상과제 분야별 평가

○ 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위원장 포함 10인 (민간 8인, 내부 2인)

– 주요정책 소위원회 : 민간 위원 19인

※ 평가 내실화를 위해 주요정책 소위원회 위원(민간위원)과 청내 과장급(내부위원)이 함께 평가에 참여하며,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민간위원 70%, 내부위원 30%로 부여함

□ 세부절차

○ **자체평가자료 검토방법**

– **(국·소속기관)** 자체평가 요소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자체평가 시행계획 상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각 국·소속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평가총괄부서)** 상·하반기 평가 개최 1~2주전에 관련 자료를 주요정책 소위원회에 송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기간 부여

○ **자체평가실시**

– **(소위원회)** 자체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검토 후 각 성과목표·관리과제별 소관 국·소속기관과 질의·응답 후 평가 실시

▪ 정책별 문제점 진단, 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도출하여 정책추진과정에 환류

– **(총괄위원회)** 소위원회의 평가자료를 토대로 최종 평가결과 확정

○ **자체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등급)** 상대평가 7개 등급기준 적용

※ (1등급) 상위 5%이내, (2등급) 5%초과~20%이내, (3등급) 20%초과~35%이내, (4등급) 35%초과~65%이내, (5등급) 65%초과~80%이내, (6등급) 80%초과~95%이내, (7등급) 95%초과

– **(이의신청 및 확인)** 평가결과 확정 전 이의신청 및 확인 절차 실시

※ 평가결과 개별 공개 →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적합성 검토 → 검토결과 통보 및 최종결과 확정

– **(평가결과 확정 및 공고)** 국무조정실 및 해당 국회 상임위 제출

※ 국무조정실에서 일괄하여 전 부처 대국민 공개

2 자체평가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주 관	주 요 사 항
자체평가계획 수립	3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1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국·소속기관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에 대한 토론 및 의견수렴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심의·확정 ▪ 성과관리시행계획 심의·확정
	4월	창조행정담당관실	▪ 자체평가 계획 설명회 - 주요 변경사항 공지
상반기 점검	7~8월	자체평가위원회, 내부 평가단	▪ 상반기 평가실시 - 성과지표 난이도(목표치 도전성 등)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2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서면)
		자체평가위원회	▪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결과 검토
자체평가계획 수정 수립	7~8월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자체평가계획 수정안 심의·확정 ▪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안 심의·확정
하반기 평가	9~10월	창조행정담당관	▪ 성과관리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10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3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하반기 주요성과 발표 및 의견수렴
	11월	자체평가위원회 내부 평가단	▪ 하반기 평가실시
종합점검	12월	청·차장 및 국·소속기관장	▪ 청내 제4차 성과분석회의 실시 - '17년도 성과관리 종합점검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등 자체평가 부문별 성과 등 포함)
평가결과 확정	차년도 1~2월	창조행정담당관 자체평가총괄위원회	▪ '17년도 자체평가결과 확정 - 자체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및 검토 - 자체평가결과 심의·확정
	차년도 3월	창조행정담당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고 ▪ 자체평가결과 공개(기상청 홈페이지)

2 통합재정사업

1 자체평가 방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및 분야별(일반재정·정보화, R&D)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 분과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의결

– 분과위원회 : 자체평가 대상과제 분야별 평가(2개 분과)

○ 위원회 구성

–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 위원장 포함 5인 (민간 3인)

– 분과위원회 : 각 분야별로 위원장 포함 6인 (민간, 2개 분과)

<자체평가위원 선정 기준>

□ **일반재정·정보화**

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②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재정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R&D

①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②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③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가

④ 해당 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 전문가

<자체평가위원 제외 기준>

□ **일반재정·정보화**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가능

② 상위평가 수행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상위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R&D**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업 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가능

② 평가대상사업의 현재('16.1.1~'17.3.31) 과제책임자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현재('16.1.1~'17.3.31) 참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전문가

④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⑤ 상위평가 수행지원기관의 임직원

⑥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자체평가자료 검토

○ (평가대상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및 지표별 평정근거를 작성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입력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재정사업평가 지침상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평가대상부서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자체평가 실시

○ 일반재정·정보화, R&D 분과위원회

– 대상사업별 자체평가 지표에 의거 2회차에 걸친 심층평가 실시

–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평가대상사업을 '예산 규모(2016년 예산) 기준'으로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화

–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규모 및 사업수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

– 분과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총괄위원회에 제출

○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기상청 사업별 상대등급 의결

2 자체평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 ‘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선정	’16. 11월 말
○ ‘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설명회 개최	’16. 12월 중순
○ ‘17년 통합재정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	’17. 2월 초
○ ‘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1차 분과위원회 개최(서면)	’17. 2월 말
○ ‘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17. 2월 말
○ ‘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1차 평가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17. 3월 상순
○ ‘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2차 분과위원회 개최	’17. 3월 중순
○ ‘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 결과 심의·의결	’17. 3월 하순
○ ‘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17. 3. 31.

3 행정관리역량

1 자체평가 방법

□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4인으로 소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자료 제출 및 검토

○ **(인사·조직·정보화)** 자체평가 요소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 및 평가총괄부서에 제출

○ **(평가총괄부서)** 자체평가계획상의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따라 각 국·소속기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자료 검토

○ 소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충분한 사전검토시간 부여

□ 자체평가 실시

○ **(소위원회)** 자체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검토 후 평가

– 지표별 문제점 진단, 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도출하여 정책추진과정에 환류

○ **(자체평가총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평가결과 확정

2 자체평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 '17년도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계획 확정	'17. 3월
○ '17년도 상반기 행정관리역량 자체점검 실시	'17. 6~7월
○ '17년도 하반기 행정관리역량 자체점검 실시	'17. 12월
○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개최, 평가 실시	'18. 1월
○ '17년도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 심의·의결 (자체평가총괄위원회 확정)	'18. 1월
○ '17년도 행정관리역량 평가결과 보고서 및 실태점검 결과 제출	'18. 1월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실효성 제고

○ 평가결과를 정책, 예산, 조직 등에 반영으로 환류 강화

○ 성과 보상제도 운영으로 구성원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참여 유도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도와 제도 정착 정도를 감안하여 환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 강화

○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내부 국·소속기관 평가와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반영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부문

○ 정책추진 단계별(계획, 집행, 성과 및 환류) 평가 시 개선 제안사항은 차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평가지표에 개선정도를 포함

○ 전년도 평가결과 조치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

□ 예산부문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투자우선순위 및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비 조정 등에 반영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폐지·축소 유도,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통폐합·방식 개선 등 추진

□ 조직부문

○ 기능 재설계 등 조직·인력 운영방안과 연계 추진

– 중기인력 운영계획, 조직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

○ 성과 미흡 기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 재배정

– 통합정원 등 정원감축 및 조직진단 시 효율화 대상으로 우선 선정

– 인력 재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포상,성과급 등) 활용계획

□ 포상

○ 성과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기여자 등 포상

□ 성과급

○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등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 시 자체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에 반영

4 평가결과의 공유·확산 방안

□ **평가결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 등 개최**

○ 기관장(또는 부서장) 주재 성과보고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평가결과 전파

□ **성과관리 교육강화로 정부업무평가 정착**

○ 순회교육, 설명회, 운영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성과관리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5 평가결과의 공개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구분	공개시기	방 법
'17년도 자체평가 계획	'17. 4.	기상청 홈페이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17년도 자체평가 계획 수정	'17. 9.	〃
'17년도 자체평가 결과	'18. 3.	〃

[별첨]

2017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Ⅰ. 주요정책

1. 평가대상

○ 총 21개 국.소속기관, 34개 관리과제

※ 국·소속기관별 소관 관리과제를 통합하여 종합 평가

2.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계획 (35점)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7	○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수준 ○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7.5	○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 객관성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6.5	○ 대내외 분야별 환경 분석의 적절성 - 산업경제, 사회안전, 복지, 환경, 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환경조사와 시사점 도출유무 -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대응방안 마련의 충실성
	의견수렴의 적절성	6	○ 수혜자, 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 등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등 지적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노력도
	계획의 충실성	8	○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전반적인 계획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판단 - 사전조사, 현장 의견수렴, 정책분석 결과 등의 계획 반영유무 -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반영유무 - 타 부처 및 청내 국·소속기관 수준의 협업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협업계획 발굴 유무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평가기준
집행 (25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7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성과지표달성도	10.5	○ 정량평가 - 성과목표 또는 대표지표 성과지표 달성도 (6.5점, 난이도 평가대상 성과지표) - 관리과제 또는 보조지표 성과지표 달성도(4점)
	전략적 대응성	7.5	○ 모니터링 실적 및 전략적 대응성
성과 및 환류 (40점)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2.5	○ 목표한 성과 발생 여부(7.5점) - 과제수행으로 인한 주요성과, 관련 통계 등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등 - 성과가 고객 또는 대국민에게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 ○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국·소속기관의 주요 활동 및 성과(5점) - 자유형식으로 주요 내용 기술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6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및 성과
	상위정책 기여여부	6	○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 청장 지시사항)에 기여여부
	향후 기대효과	6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 향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9.5	○ 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 미흡, 개선, 보완사항 발굴 및 이를통한 기대효과 제시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1) 계획단계(35점)

<table>
<tr><td>평가지표</td><td>1-1. 관리과제 구성의 적절성 (7점)</td></tr>
<tr><td>측정방법</td><td>평가수준 A. 상위 전략을 기준으로,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 수준(배점 4점)
<table>
<tr><td>S</td><td>A</td><td>B</td><td>C</td><td>D</td></tr>
<tr><td>5.0~4.1</td><td>4.0~3.1</td><td>3.0~2.1</td><td>2.0~1.1</td><td>1.0~0</td></tr>
</table>
평가수준 B. 관리과제의 구성의 적절성 (배점 3점)
<table>
<tr><td>S</td><td>A</td><td>B</td><td>C</td><td>D</td></tr>
<tr><td>5.0~4.1</td><td>4.0~3.1</td><td>3.0~2.1</td><td>2.0~1.1</td><td>1.0~0</td></tr>
</table>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td></tr>
<tr><td>측정기준</td><td>【판단기준】

A. 관리과제 목표의 명확성과 질적 수준
-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을 고려하여, 관리과제에 대한 목표가 명확한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
- 관리과제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성적 판단

B. 관리과제의 구성의 적절성
- 관리과제의 세부 구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td></tr>
<tr><td>평가근거/자료</td><td>○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과 관리과제·주요업무 등에 관한 자료</td></tr>
</table>

평가지표	1-2. 성과지표의 적절성(성과목표, 관리과제) (7.5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배점 3.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배점 1.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C.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과 객관성(배점 2.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성과지표의 난이도 평가는 별도실시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성과목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의 대표성
- 피평가 국·소속기관의 임무·역할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과제의 추진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

B. 성과지표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
- 성과목표-성과지표, 관리과제-성과지표의 명칭과 측정방식의 일치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C.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과 객관성
- 성과지표 측정방식의 명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자료

○ 피평가 대상의 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

평가지표	1-3.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6.5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계획수립 단계 시, PESTLE 분석의 충실성(배점 3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계획수립 단계 시, SWOT 분석의 충실성(배점 3.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계획수립 단계 시, PESTLE 분석의 충실성

- PESTLE 분석을 통한 산업경제, 사회안전, 복지, 환경, 기술, 국제협력 등 분야별 관련 통계현황·사례조사에 대한 정성적 판단
  - ▪ 관련 통계현황자료 및 시사점 분석 유무
  - ▪ 기타 객관적 사전조사 실적 유무

B. 계획수립 단계 시, SWOT 분석의 충실성

- SWOT 분석을 통한 문제점 분석,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자료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평가지표	**1-4. 의견수렴의 적절성 (6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실성 (배점 4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국회, 언론, 감사, 평가결과 의견수렴의 충실성 (배점 2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충실성
- 수혜자·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전문가 등 계획단계에서 의견수렴 충실도에 대한 정성적 판단
  - ▪ 수혜자(현장)의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 ▪ 이해관계자(관련 부처 포함)·전문가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 ▪ 국민·공무원 제안 등 기타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과 반영 실적

B. 국회, 언론, 감사, 평가결과 의견수렴의 충실성
- 국회, 언론, 감사 의견 반영 실적
- 전년도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의견에 대한 반영 실적

평가근거/자료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평가지표	1-5. 계획의 충실성 (8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업 계획 수립의 충실성(8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업 계획 수립의 충실성

-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업 계획 수립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 사전조사, 현장 의견수렴, 정책분석 결과 등의 계획 반영 유무
  -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변화 모니터링 계획 반영유무
  - 타 부처 및 청내 국·소속기관 수준의 협업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협업 계획 발굴
  - 객관적 정책분석 방식의 적용 유무
  - 정책분석 결과에 기초한 대비책 제시 유무

평가근거/자료

○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실적 자료

(2) 집행단계 (25점)

평가지표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7점)**
측정방법	○ 관리과제 상의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 추진계획 일정 준수율(%) = (추진건수 × 100) / 추진계획건수 - 최종점수 = 7점 × 추진계획일정준수율
측정기준	○ 제시된 측정방법으로 정량평가 ○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일정이 미 준수가 되었을 시, 외생적 요인에 대한 적합성 판단으로 재평가 - (평가총괄부서) 외생적 요인에 대한 적합성 평가 가능여부 판단 <외생적 요인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변화에 의한 지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정권교체, 정부조직 개편 등에 의한 국정기조 변화, 부처통·폐합 등으로 인한 지연
평가근거/자료	○ 추진계획 대비 실적 자료

평가지표	**2-2. 성과지표 달성도 (10.5점)**
측정방법	**○ 성과목표(또는 대표지표) 성과지표달성도 (6.5점)** - 성과지표달성도(%) = (실적치 × 100) / 목표치 - 최종점수 = (6.5점) × 성과지표달성도 × 성과지표난이도 가중치 **○ 관리과제 성과지표달성도 (4점)** - 성과지표달성도(%) = (실적치 × 100) / 목표치 - 최종점수 = (4점) × 성과지표달성도
측정기준	○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으로 정량평가
평가근거/자료	○ 실적 자료

평가지표	**2-3. 전략적 대응성 (7.5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3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대응실적의 효과성 (4.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최종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등 모니터링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 ▪ 모니터링 내용의 충실성
  - ▪ 모니터링 방식의 적절성
  - ▪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한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B. 도출 문제에 대한 대응실적의 효과성

-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실적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 ▪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유무
  - ▪ 객관적 대응실적 유무
  - ▪ 대응실적에 따른 효과발생 여부 등

평가근거/자료

○ 전략적 대응성에 대한 객관적 실적 자료

(3) 성과 및 환류단계 (40점)

평가지표	**3-1.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정도 (12.5점)**

측정방법

평가수준 A. 목표한 성과의 발생여부(7.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평가수준 B.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주요활동 및 성과(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평가지표 A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목표한 성과발생 여부
- 과제수행으로 인한 주요성과, 관련 통계 등 대표적인 수치의 변화 등
- 성과가 고객 또는 대국민에게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
  - ▪ 국민 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효과 등
  - ▪ 외부 및 내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시: 이해관계자, 정책현장 및 고객, 대국민 등의 인지도 변화)

B.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목표한 성과발생을 위해 수행한 국·소속기관의 주요활동 및 성과
- 자유 형식으로 내용(1page 이내)을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자료

○ 객관적 실적 자료
○ 주요 활동 및 성과 요약자료

평가지표	3-2. 이전 평가, 국회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6점)

측정방법

○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 최근 3년간 국회, 언론, 감사, 평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정도 및 성과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자료

○ -

평가지표	3-3. 상위정책에 기여여부 (6점)
측정방법	○ 과제수행을 통해 상위정책(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기상업무발전계획)에 대한 기여여부 S: 5.0~4.1 / A: 4.0~3.1 / B: 3.0~2.1 / C: 2.0~1.1 / D: 1.0~0 ※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자료	○ 객관적 실적 자료

평가지표	**3-4. 향후 기대효과 (6점)**

측정방법

○ 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 향후,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도 또는 **부작용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자료

○ -

평가지표	3-5. 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9.5점)

측정방법

A. 성과의 원인분석의 충실성(4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B. 개선・환류 계획의 충실성(5.5점)

S	A	B	C	D
5.0~4.1	4.0~3.1	3.0~2.1	2.0~1.1	1.0~0

※ 평가점수=평가수준×배점/5
・ 평가수준: S~D 등급 내 해당점수(0.1점 단위)

측정기준

【판단기준】

A. 성과의 원인분석 충실성
- 발생된 성과의 높고 낮음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B. 개선・환류 계획의 충실성
- 성과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개선을 통한 성과향상 방안 마련 충실성에 대한 정성적 판단

평가근거/자료

○ 실적 자료

Ⅱ. 통합재정사업

1. 평가대상

○ 2016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관리대상 단위사업 전체

2. 평가지표 체계

<table>
<tr><th colspan="2">평가단계 및 평가지표</th><th>배점</th><th>측정방법</th></tr>
<tr><td>관리
(30점)</td><td>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td><td>30점</td><td>☐ (일반재정·정보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table>
<tr><td>답변</td><td>“아니요”</td><td>“어느 정도”</td><td>“상당한 정도”</td><td>“예”</td></tr>
<tr><td>배점</td><td>13～17</td><td>18～22</td><td>23～27</td><td>30</td></tr>
</table>

☐ (R&D) 집행실적,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15점)
<table>
<tr><td>답변</td><td>“아니요”</td><td>“어느 정도”</td><td>“상당한 정도”</td><td>“예”</td></tr>
<tr><td>배점</td><td>6～8</td><td>9～11</td><td>12～14</td><td>15</td></tr>
</table>
○ 사업 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을 평가하여 3단계로 점수 부여(15점)
<table>
<tr><td>답변</td><td>“아니요”</td><td>“어느 정도”</td><td>“예”</td></tr>
<tr><td>배점</td><td>7～9</td><td>10～12</td><td>13～15</td></tr>
</table>
</td></tr>
<tr><td>결과
(60점)</td><td>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td><td>50점</td><td>☐ (일반재정·정보화) 성과목표의 적극성 및 목표의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 목표의 적극성에 따라 만점 기준을 50/48/46점으로 구분
○ 적극성에 따른 만점기준에 목표달성률(목표대비 실적)을 곱하여 최종점수 산정

<table>
<tr><td>답변</td><td>매우적극</td><td>적극</td><td>보통</td></tr>
<tr><td>배점</td><td>50</td><td>48</td><td>46</td></tr>
</table>

※ 성과지표별 점수 = 목표의 적극성 점수 × 목표달성률</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td><td></td><td></td><td>□ (R&D) 사전에 확정된 성과계획서 점검 결과 확인
ㅇ 2016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계산
※ 성과지표별 점수 = 50점 × 지표가중치 × 달성률 × 성과지표 적절성</td></tr>
<tr><td>(일반재정·정보화)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
(R&D) 사업이 상위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td><td>20점</td><td>□ (일반재정·정보화)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부처 특성에 적합한 우수성 기준과 배점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ㅇ 자체 기준: 외부기관의 평가 여부 및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지 여부가 입증된 경우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자체 기준: 4단계 배점 방법 >
<table><tr><td>답변</td><td>“아니요”</td><td>“어느 정도”</td><td>“상당한 정도”</td><td>“예”</td></tr><tr><td>배점</td><td>5～9</td><td>10～14</td><td>15～19</td><td>20</td></tr></table>
□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가 상위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도를 평가
ㅇ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 핵심성 평가
ㅇ 제출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에서 제시한 성과의 핵심성 점수를 인정
※ 최종 점수 : 핵심성 배점 X 근거자료의 타당성 (점수 인정%)</td></tr>
<tr><td rowspan="3">가점</td><td>(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td><td>4점</td><td>□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확인</td></tr>
<tr><td>(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td><td>4점</td><td>□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비용절감 또는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업무·대민서비스 개선 여부를 확인</td></tr>
<tr><td>(R&D) 성과지표를 질적지표로 설정한 경우</td><td>4점</td><td>□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성과지표를 질적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확인
ㅇ 성과계획서 점검 결과, 질적 성과지표로 인정받은 지표의 가중치가 전체의 0.6 이상인 경우</td></tr>
</table>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 일반재정 · 정보화와 지역사업 분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1-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30점)
측정방법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 < 4단계 배점 방법 >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13~17 18~22 23~27 30
측정기준	**1 '예' 판단 기준 (30점)** 가. 최근3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정상 집행된 경우 * 상반기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4분기 집행규모가 당초 계획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등 2016년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시기 및 집행대상이 모두 적정한 경우 ※ 2016년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여부 ① 조기집행대상사업 : 조기집행을 위한 분기별 계획 준수여부로 판단(의무적 판단) ② 조기집행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 부처자율적으로 배정한 분기별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 준수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이 단순한 분할이었던 경우는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여부를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재량적 판단)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국제유가 변동 포함),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소액기준은 부처 자율결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2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25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95% 그리고 실집행 85%* 이상인 경우 * 출연, 보조, 위탁사업 등의 경우 실집행 판단 의무 ※ 단위사업안에 직접수행사업과 출연사업이 혼재돼 있는 경우 점수기준 - 부처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의 가중치 방식도 가능 (가중치 방식) A단위사업이 직접수행80억, 출연20억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 <1단계> 직접수행은 집행률로 판단하여 점수 배부(예:25점), 출연은 집행률과 실집행을 모두 판단하여 점수 배부(예:15점) <2단계> 25점×0.8(예산비중) + 15점×0.2 = 23점 부여 나. 집행률은 100%이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6년 집행률이 95% 그리고 실집행 85% 이상인 경우

※ 집행률 제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2점～-2점의 가감점 부여

③ '어느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20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95% 그리고 실집행 60～85% 수준인 경우

나.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집행률 제고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되어 '16년 집행률이 85% 그리고 실집행 75% 이상인 경우

다. 집행률은 100%이나,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예: 난방비 지원사업 등)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된 경우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 집행률 제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2점～-2점의 가감점 부여

④ '아니요' 판단 기준(기본배점 15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 그리고 실집행 60% 미만인 경우

나. 집행률 부진에 대해 별도의 개선노력이 없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16년 집행률이 70% 그리고 실집행 60% 미만인 경우

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하였고 지적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요' 처리 ※ 집행률 제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2점~-2점의 가감점 부여
평가근거/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첨 부 재정집행 실적 기준

① 집행률(%) = $\frac{\text{사업비 현액 집행실적}}{\text{사업비 현액}^{*}} \times 100$

* 사업비 현액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② 실집행률(%) = $\frac{\sum \text{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실적}}{\sum \text{보조사업자 사업비}} \times 100$

▪ (실)집행실적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집계 금액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최종수요자 실집행실적 파악이 어려운 출연금(35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330-01,03),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320-01,07)는 다음기준에 따라 직접 파악

㉠ 출연금 : 출연금을 받은 1차 기관의 집행액

㉡ 자치단체(민간) 경상(자본)보조 : 기초자치단체(민간) 집행액
⇒ 자치단체(민간)에서 실행한 국고보조금의 실집행액

(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국고보조율 50%, 총 100억 집행) → 100억 × 0.5 = 50억 (국고 실집행액)

③ 분기별 집행률(%)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계획 및 실적 기준

(2)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50점)
측정방법	□ 성과목표의 적극성 및 목표의 달성 정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 목표의 적극성에 따라 만점 기준을 50/48/46점으로 구분 ○ 적극성에 따른 만점기준에 목표달성률(목표대비 실적)을 곱하여 최종점수 산정 **※ 목표달성 실적이 출처기관의 실제 데이터와 상이한 경우 5점 감점**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절반으로 삭감하여 점수 산정** - 성과계획서에 대한 기재부의 사전 확인·점검시 성과지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수정성과계획서상에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하지 않는 경우 -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성과지표에 대해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경우
측정기준	**1 목표의 적극성** 가. 목표가 매우 적극적인 경우(매우적극, 50점 만점) ○ 성과목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 등보다 5%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만족도 지표는 제외) 예1) 성과지표가 공식통계(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인 경우, 이전 3년 평균 통계보다 5%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 예2) 성과지표가 공식통계가 아닌 경우, 성과보고서상 이전 3년 평균 달성 실적보다 5%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

○ 성과목표가 이전 3년 평균 실적보다 5% 이상 높아진 목표는 아니지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 (자체평가위원회 논의내용에 반드시 기입)

나. 목표가 적극적인 경우(적극, 48점 만점)

○ 성과목표를 이전 3년 평균 실적 등보다 3% 이상 높은 목표로 설정한 경우(만족도 지표는 제외)

예1) 성과지표가 공식통계(통계법상 통계작성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로서, 이전 3년 평균 통계보다 3%이상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경우

예2) 성과지표가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이전 3년 달성 실적보다 3%이상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경우

○ 성과목표가 이전 3년 평균 실적보다 3% 이상 높아진 목표는 아니지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경제·사회 등 환경변화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수준이라고 인정한 경우 (자체평가위원회 논의내용에 반드시 기입)

다. 목표의 적극성이 보통인 경우(보통, 46점 만점)

○ 가,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성과지표의 목표가 이전 3년 평균 달성 실적보다 3% 미만으로 향상된 목표를 제시한 경우

○ 만족도 지표는 목표의 적극성을 보통으로 산정

※ 신규지표는 해당 신규지표 기준 과거 3년 통계 등으로 판단, 과거 3년 통계 등을 도출할 수 없는 경우 "보통"으로 평가

* 다만, 부처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통"이 아닌 다른 등급으로 평가 가능

※ 외부요인(예산증가 등)으로 성과목표가 증가한 경우, 외부변화비율(ex 예산증가율) 대비 목표지표 증가율로 판단

② 목표달성률

가.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률(%) = $\frac{\text{성과지표 달성 실적}}{\text{성과지표(만점)}} \times 100$

* 분모는 목표치를 의미하며, 분자가 분모를 초과할 수 없음

○ 통합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 달성실적이 되는 근거 데이터 등의 출처를 반드시 기입

※ 외부 요인에 의해 목표달성률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경우, 최대 3점 이내에서 가·감점 가능(자체평가위원회 논의내용 기입)

③ 최종점수 산정

가. 성과지표별 점수 = 목표의 적극성 점수 × 목표달성률

나.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점수 산출(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수산출 예시

○ 예시 1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삭감)
A	50	51.5	적극	90	0.4
B	100	105	매우적극	85	0.2
C	20	22	매우적극	100	0.2(삭감)
D (만족도)	90	99	보통	100	0.2

- 최종점수 = 48×0.9×0.4 + 50×0.85×0.2 + 50×1×0.1 + 46×1×0.2 = 39.98 → 40점

○ 예시 2

성과지표	3년 실적	성과목표	적극성	달성률	가중치(삭감)
A	80	84	매우적극	80	0.3
B	100	110	매우적극	100	0.3
C	10	10	보통	70	0.2
D (만족도)	80	84	보통	80	0.2(삭감)

- 최종점수 = 50×0.8×0.3 + 50×1×0.3 + 46×0.7×0.2 + 46×0.8×0.1 = 34.12 → 34점

평가근거 /자료	□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는 '16년도 수정성과계획서 □ 기재부의 '16년도 성과계획서 사전검토 결과 □ 성과보고서 등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및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평가지표	**2-2.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가?(2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 달성도 외에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부처특성에 적합한 우수성 기준과 배점 기준을 설정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성과우수성 인정기준은 평가결과 및 환류계획 제출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3) 가점

평가지표	**(일반재정)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노력(가점 4점)**
측정방법	□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 또는 사업방식 효율성을 제고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4점 부여, 2014.7.1이후 실적) 가. 사업방식 개선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그 결과 비용을 절감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 기존에 외부위탁 또는 용역 등 별도의 비용을 들여 수행하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다음해 예산 편성 시 해당 비용만큼 감액하여 편성한 경우 * 사업효과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측정되어야 함 * 감사원, 국회 등 외부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사업방식 등을 개선한 경우는 당연 조치사항이므로 인정대상 아님 나.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경우
평가근거/자료	□ 구체적인 비용절감 방안/효과 관련 자료 □ 예산성과금 인정 자료

평가지표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가점 4점)**
측정방법	□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비용절감 또는 정보화사업을 통한 내부업무·대민서비스 개선 여부를 확인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서비스 개선 성과 판단 기준**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 4점 부여, 2014.7.1이후 실적) 가.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를 비용절감에 반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활용이 낮거나 불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구체적으로 개선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한 경우 나. 정보화사업을 통해 내부 행정업무 및 외부 대민서비스 개선, 국제협력관계 제고 등을 통해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 예) 행정업무 개선 : 업무절차 개선, 정보연계·공유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인 업무처리방식의 개선 ▪ 예) 대민서비스 개선 : 소득증대, 정보격차해소, 절차단축, 신규 수혜자 발굴 등 정보화를 통한 서비스전달체계 개선 및 대국민 편익 증진 **※ 정보시스템이 수반되지 않는 정보화사업(국제협력, 지원사업 등)의 경우, '나'항목에 답변**
평가근거/자료	□ 정보시스템 및 기능 통·폐합, 비용절감 관련 자료 □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객관적 실적 자료

□ R&D(지역R&D)사업 분야

(1) 사업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1-1.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30점)

측정방법

□ 집행실적,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

○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확인하여 4단계로 점수부여(15점)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상당한 정도"	"예"
배점	6 ~ 8	9 ~ 11	12 ~ 14	15

○ 사업 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 적절성을 평가하여 3단계로 점수 부여(15점)

답변	"아니요"	"어느 정도"	"예"
배점	7 ~ 9	10 ~ 12	13 ~ 15

측정기준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15점)

① '예' 판단 기준 (15점)

가. 최근3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이 100% 정상 집행된 경우

* 상반기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4분기 집행규모가 당초 계획을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등 2016년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고, 집행시기 및 집행대상이 모두 적정한 경우

※ 2016년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여부
① 조기집행대상사업 : 조기집행을 위한 분기별 계획 준수여부로 판단(의무적 판단)
② 조기집행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 부처자율적으로 배정한 분기별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계획 준수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이 단순한 분할이었던 경우는 분기별 집행계획 준수여부를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재량적 판단)

*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계획, 조직개편, 환율변동(국제유가 변동 포함), 세수부족으로 인한 불용액, 소액의 집행잔액(소액기준은 부처 자율결정),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용, 사업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실적 등은 정상집행으로 간주

2 '상당한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3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95% 또는 실집행률 85%* 이상인 경우

* 출연, 보조, 위탁사업 등의 경우 실집행 판단 의무(23쪽, 재정집행 실적 기준 참조)

※ 단위사업안에 직접수행사업과 출연사업이 혼재돼 있는 경우 점수기준

- 부처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의 가중치 방식도 가능

(가중치 방식) A단위사업이 직접수행80억, 출연20억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 <1단계> 직접수행은 집행률로 판단하여 점수 산정(예:25점), 출연은 집행률 또는 실집행률을 판단하여 점수 산정(예:15점)

<2단계> 25점×0.8(예산비중) + 15점×0.2 = 23점 부여

나. 집행률은 100%이나, 분기별 집행계획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6년 집행률이 95% 또는 실집행률 85% 이상인 경우

※ 집행률 제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1점의 가감점 부여

3 '어느 정도' 판단 기준(기본배점 10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95% 또는 실집행률 60~85% 수준인 경우

나. 집행률이 100%미만이나, 집행률 제고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개선되어 '16년 집행률이 85% 또는 실집행률 75% 이상인 경우

다. 집행률은 100%이나, 적기 집행이 중요한 사업(예: 난방비 지원사업 등) 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집행된 경우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

※ 집행률 제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1점의 가감점 부여

④ **'아니요' 판단 기준(기본배점 7점)**

가. 낙찰차액, 경상경비절감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70% 또는 실집행률 60% 미만인 경우

나. 집행률 부진에 대해 별도의 개선노력이 없거나, 전년 대비 집행률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여 '16년 집행률이 70% 또는 실집행률 60% 미만인 경우

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예산을 전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사업수혜대상이 아닌 부적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거나 회계처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리적 사유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요' 처리

※ 집행률 제고 노력의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1점의 가감점 부여

※ '집행률', '실집행률'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재정·정보화와 지역사업 분야'의 '첨부. 재정집행 실적 기준'을 활용

【사업운영의 우수성】(15점)

◆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일치하는 경우(단위사업 내 1개의 세부사업만 존재)
- '환경변화 대응의 타당성'만으로 평가
- 세부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총점 15점 안에서 자율적으로 점수 부여

① **'예' 판단 기준(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기본배점 15점)**

가.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 사업내용이 사업목표와 연계성 있게 구성된 경우

*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연계성에 대해 검토

* 단위사업 목표에 맞는 세부사업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

	나. 환경변화 대응의 타당성 - 사업개편, 기술개발, 환경변화 등 대내외적인 요소에 의해 환경변화가 발생할 때 사업목표, 내용, 추진방식을 적절하게 변동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목표가 변동된 경우, 변동 사유가 합리적이고 명확할 것 * 사업특성에 따라 특허동향, 표준화 동향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에 반영할 것(사업 착수 후 첫번째 평가 받는 신규사업에 추가 적용) ※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및 '환경변화 대응의 타당성' 대응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0~2점의 감점 부여 가능 **② '어느 정도' 판단 기준 (기본배점 11점)** 가.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예' 판단 기준 중 1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및 '환경변화 대응의 타당성' 대응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 내외의 가감점 부여 가능 **③ '아니오' 판단 기준 (기본배점 8점)** 가.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예'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목표와 내용 간 연계성' 및 '환경변화 대응의 타당성' 대응 정도에 따라 부처 자율적으로 1점 내외의 가감점 부여 가능
평가근거/자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자료 □ 회계검사보고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등 □ 예산요구서, 예산 설명자료, 사업기획보고서 등 사업목표와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개편 관련자료,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등 대내외환경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2) 목표달성 및 기여도

평가지표	2-1. 계획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50점)
측정방법	□ 사전에 확정된 성과계획서 점검 결과 확인 □ 2016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에 따라 계산
측정기준	1 아래 표에 따라 목표 달성도 산출

< '16년 목표 달성도 점수 산출 예시>

성과지표 ①	지표 가중치 ②	목표치 ③	달성치 ④	달성율 ⑤	성과 지표 적절성 ⑥	지표별 점수 ⑦	최종 점수 ⑧
지표명	0.35	100	110	100%	1	17.5	37
지표명	0.25	150	113	75.3%	1	9.4	
지표명	0.2	20	18	90.0%	0.5	4.5	
지표명	0.1	1500	1800	100%	1	5	
지표명	0.1	6	2	33.3%	0.5	0.8	
계	1						

① 성과지표: 사전 성과계획서 점검을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명 기재

※ 평가대상 기간이 '16년 회계연도이므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16년 성과계획서 점검을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를 평가에 활용

※ 성과계획서 점검을 통해 확정된 내용과 다르게 제출된 성과지표는 부적절 지표로 판정

② 지표 가중치: 사전 성과계획서 점검을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의 가중치 기재

③ 목표치: 사전 성과계획서 점검을 통해 확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기재

④ 달성치: 성과지표의 실제 달성치를 기재

⑤ 달성률 : (달성치 / 목표치) X 100

*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100% 달성으로 인정

⑥ 성과지표 적절성 : <성과지표 적절성>을 참고하여 작성

< 성과지표 적절성 >

기준	가중치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판정된 경우	1.0
성과지표가 부적절하다고 판정된 경우	0.5

* 사전 성과계획서 점검 결과와 연계

⑧ 지표별 점수 : 50점 X ②지표 가중치 X ⑤달성율 X ⑥성과지표 적절성

⑨ 최종 점수 : 각 성과지표의 지표별 점수 합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달성도 허위 보고나 데이터 조작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적발시 R&D분야 상위평가**에서 **'1-2.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20)' 평가결과(등급)을 한단계 하향 조정**

평가근거/자료	☐ 성과계획서 최종 점검 결과 ☐ 성과지표 당해연도 달성치 자료, 성과달성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평가지표	2-2. 사업이 상위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20점)
측정방법	□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가 상위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도를 평가

측정기준

□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 기여도

◆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이 일치하는 경우(프로그램 내 1개의 단위사업만 존재)에는 단위사업의 성과가 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만으로 평가

가. 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의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 핵심성 평가

- 해당 단위사업의 성과가 상위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바(핵심성)를 데이터 기반의 수치화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

* 핵심성: 해당 성과 창출로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이 가능한 정도(목표 달성에 있어 기여도)

< 핵심성 배점 판단 기준 >

등급	판단 기준	배점*
1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매우 높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에 매우 높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상위 목표를 100%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0
2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높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에 높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상위 목표를 90% 이상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17~20
3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보통인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에 보통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상위 목표를 70% 이상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14~17
4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낮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에 낮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상위 목표를 50% 이상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11~14
5	해당 성과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핵심성이 매우 낮은 경우 (예시) 의도한 성과가 창출되어 상위 전략 및 프로그램 목표 달성도에 매우 낮게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상위 목표를 50% 미만 달성(가능)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11

* 'A～B'는 'A≦배점<B'를 의미함

나. 제출 근거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에서 제시한 성과의 핵심성 점수를 인정

* 근거자료의 타당성: 자료의 신뢰성, 자료의 존재 유무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 개념

< 근거자료의 타당성 판단 기준 >

등급	판단 기준	점수 인정
상	근거자료가 타당하여, 제시된 성과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100% 인정
중	근거자료의 타당성이 다소 미흡하여,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한 경우	75% 인정
하	근거자료가 타당하지 않아, 제시된 성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50% 인정

다. 최종 점수 : 핵심성 배점 X 근거자료의 타당성(점수 인정%)

* (예시) 핵심성(16) X 근거자료의 타당성(75%) = 12점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근거/자료

□ 사업의 상위 전략과의 연계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성과소개서

□ 사업의 성과분석보고서

□ 기타 제시된 사업성과가 사업목표와 연관성·핵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3) 가점

평가지표	(가점) 성과지표를 질적지표로 설정한 경우(가점 4점)
측정방법	□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도록 성과지표를 질적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확인
측정기준	□ **질적지표 위주 설정여부 판단 기준** 가. 성과계획서 점검 결과, 질적 성과지표로 인정받은 지표의 가중치가 전체의 0.6 이상인 경우 * 단, 평가 대상 사업이 사업 착수 후 첫 번째로 평가 받는 경우(일반 4년차/기초는 5년차), 평가대상 기간의 질적 지표 가중치가 전체의 0.4 이상 * '16년도 성과계획서(최종)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평가근거/자료	□ '16년도 성과계획서(최종)

Ⅲ. 행정관리역량

1. 평가대상

○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등 3개 영역별 내부관리 능력 및 생산성 향상 노력성과

2. 평가지표 체계

평가지표	배점 (100점)
①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	18
② 국민 소통·협업	17
③ 효율적인 정부인사 운영	30
④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20
⑤ 사이버안전수준 강화	15

3.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지표	1. 정부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영(18점)

측정방법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실적(5점)

가. 회의실적(2점) : (2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회 수 / 전체 위원회 수) × 100

*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관리대상 위원회 중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 비율

구 간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80% 미만 ~70% 이상	70% 미만 ~50% 이상	50% 미만
배 점	2	1.5	1	0.5	0

나. 위원구성의 대표성(1점) : 여성위원 위촉비율

* **위원회별** 여성위원 **위촉비율**(여성위원 수 / 위촉직 위원 수)의 **평균**

구 간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배 점	1	0.5	0

다. 위원회 현황 공개(1점)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공개 횟수

* 연중 부처 홈페이지에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월별)를 공개한 횟수

구 간	12회	11회~4회	4회 미만
배 점	1	0.5	0

라. 직무윤리 규정 도입(1점) : 위원 면직·해촉 기준 도입 여부

*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관리대상 위원회 중 직무윤리 규정 도입한 위원회 비율 (위원 면직·해촉 기준 도입 위원회 수 / 전체 위원회 수)

구 간	90% 이상	9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배 점	1	0.5	0

② 정부 기능분류(BRM) 및 조직정보 관리 수준(2점)

구분	우수	미흡
기능분류정보	1	0
조직관리정보	1	0

○ 평가기준 : 정부기능분류·정부조직관리 정보시스템에서 관리중인 기능분류 및 조직정보(기구·정원)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정비 실적

- **우수** : 해당 정보의 현행화로 정비대상이 없는 경우
- **미흡** : 해당 정보가 현행 정보와 불일치로 정비 대상이 있는 경우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5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 없음
배 점	5점	4점	2점	0점

○ 평가 요소

- (a)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실적 : 2017년 부처별로 지정된 통합정원의 전체 규모 및 계급별 규모에 맞게 정원을 감축했는지 여부(연말 기준)
- (b) 유동정원제 운영 실적 :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 유동정원제 또는 자체 인력 전환·재배치한 실적

○ 평가 기준

- 우수 : (a), (b) 두 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통 : (a)를 충족하고 (b)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미흡 : (b)를 충족하고 (a)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실적 없음 : (a), (b)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택지표> 2개 지표 중 1개 이상 자율적으로 선택

④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및 활용 노력도(3점)

구 간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3	1.5	0

○ 평가 기준 : 행자부에서 배포하는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지」를 활용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활용하였는지 여부

- 우수 :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조직부서 내 공유 및 조직관리 개선 등에 활용
- 보통 : 자가진단 실시
- 미흡 : 자가진단 미실시

⑤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3점)

가. 자율성 위임정도(1.5점)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1.5	1	0.5	0

○ 평가 기준 : 책운기관 신규 지정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자율성 위임 건수

	- 매우우수 : 책운기관 신규 지정 또는 자율성 위임 3건 이상 - 우수 : 자율성 위임 2건 - 보통 : 자율성 위임 1건 - 미흡 : 실적없음 **나. 자율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장의 노력도(1.5점)** ○ 평가 기준 - 매우우수 : 책운기관 평가와 자체평가 일원화 또는 책운기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참여한 발표·행사·홍보·교육·연구지원 등 활동사례 3건 이상 - 우수 : 책운기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참여한 발표·행사·홍보·교육·연구지원 등 활동사례 2건 - 보통 : 책운기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참여한 발표·행사·홍보·교육·연구지원 등 활동사례 1건 - 미흡 : 실적없음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 실적** - 관리대상위원회 :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16. 6월 기준 행정자치부 관리대상 목록에 있는 위원회(행자부 목록) * 단, 평가대상 기간 내 폐지된 위원회 및 위원회 정비(폐지, 통합, 협의체 전환) 대상으로 관련 법률이 국회 제출된 경우는 모수에서 제외 - 회의 :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출석·서면회의 개최 수 - 위촉위원 : 일정한 자격에 해당하여 위촉권자에 의해 위촉된 자 * 당연직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위원회 현황 공개 : 매월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정부조직관리지침 상 서식)' 를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횟수 - 직무윤리 규정 도입 : 개별 위원회 관련 법령, 기타 세칙·지침·규정 등에 위원 면직·해촉 기준 반영 여부

등 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1.5	1	0.5	0

② 정부기능분류(BRM) 및 조직정보 관리 수준

구분	정비대상
기능분류	① 소기능(5단계)·단위과제(6단계)에 각각 1개 이상 단위과제·단위과제카드가 없는 경우 ② 폐지부서가 존재하는 당위과제가 있는 경우
조직정보	직제개정 시점의 기구·정원 등 조직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 조직현황은 조직관리시스템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③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등 인력운영 효율화

- (a) **부처별 통합정원 감축 실적** : 행자부가 '16년도에 이미 확정하여 부처에 통보한 '17년 통합정원 규모와 연말 실제 감축된 규모를 비교·확인
- (b) **유동정원제 등 운영 실적** : 유동정원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 여부, 운영과정의 충실성, 실시결과 등을 종합 고려

※ 통합정원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찰청은 (a) 적용을 제외하는 대신 별도의 자체 인력효율화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④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 실시 및 활용 노력도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지」에 기초하여 부처별 조직관리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조직부서내 공유, 조직관리 역량 강화 또는 취약점 개선을 위해 결과를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우수, 진단만 실시한 경우는 보통, 진단을 미실시한 경우는 미흡

* '16년에 행자부에서 기 배포한 조직관리역량 자가진단지를 수정·보완하여 배포 예정('17년 하반기)
* 자가진단 결과지, 조직관리 등에 활용한 각종 자료 확인

⑤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특례 활용 정도

- 자율성 위임 정도 : 소속기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의 신설이나 조직·정원, 인사, 예산 관련 자율성 특례사항을 위임하고, 운영한 사례 건수
- 중앙행정기관장 노력도 : 소속 책임운영기관 평가를 자체평가에 활용하거나 소속 책임운영기관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참여한 발표·행사·홍보·교육·연구지원 등 활동사례 건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지표	2. 국민 소통·협업(17점)

측정방법

①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5점)

○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여부 및 평가 요소별 달성 항목을 정량 평가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5점	4점	2점	1점

②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5점)

○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률(**3점**)

- 등록 건수(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 등록대상 건수

구분	등록률(%)	점수
탁월	98이상	3
우수	95~97	2
보통	90~94	1
미흡	89이하	0.5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1점**)

- 대면회의(**1점**), 서면회의(**0.5점**) 미개최(**0점**)

○ 정책실명제 자체 홍보 실적(**1점**)

- 중앙·지역 일간지·TV(**1점**), 기타 홈페이지·블로그 등(**0.5점**), 미홍보(**0점**)

<선택지표> 2개 지표 중 1개 이상 자율적으로 선택

③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국민 소통·협업 정도(2점)

가. '국민디자인과제 추진계획' 수립 여부(1점)

* 수립 1점, 미 수립 0점

나.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활용한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이력 관리(1점)

* 이행 1점, 미 이행 0점

평가지표	2. 국민 소통·협업(17점)

④ 국민 소통·협업을 통한 정책 개선(5점)

가. 2017년 국민제안을 채택·실시해 정책을 개선한 실적(1점)

* 존재 1점, 미 존재 0점

나. 국민 소통·협업 우수사례 관련 정부부처 경진대회 수상 여부(1점)

* 수상 1점, 미 수상 0점

다. 국민 소통·협업 우수사례 2건(3점)

등 급		우수	보통
배점	사례 1	1.5	1.0
	사례 2	1.5	1.0

* 2건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기관별 행정지식 공유·소통 수준 (4점)

□ 지표 개요

○ 기관별 지식행정 활성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실적을 평가

※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473호(2017.2.9.), 「2017년 정부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송부 및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안내 참고

《 「지식행정」의 개념 및 추진 근거 》

▪ 지식행정의 개념
정부 내 각종 업무 관련 지식의 창출·공유·활용과정을 조직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30조(행정지식관리의 전자적 관리), 동 시행령 제35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7조(행정기관의 지식행정 활성화)

□ 측정 방법

○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여부 및 평가 요소별 달성 항목을 정량 평가

등 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5점	4점	2점	1점

평가지표	2. 국민 소통·협업(17점)

□ 측정 기준

○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4점)

<측정기준>

【 평가요소 】

ⓐ 기관별 지식행정활성화계획 수립했는가?
※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7조 제2항

ⓑ 지식행정 책임관.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가?
※ 공문, 메모보고 등 명시적 근거 제출

ⓒ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기관 자체 KMS 운영, 온-나라 표준 KMS 운영, 업무포털에서 지식공유나 업무개선 제안·토론과 같은 지식 관련 게시판 운영 등

ⓓ 업무포털이나 자체 KMS에 '온-나라 지식'으로 링크가 있는가?

ⓔ 지식 활동이 두드러진 직원을 우대하고 있는가?
※ 활동 예시 : 유용한 지식을 게시하기, 연구모임 활동하기 등
※ 우대 예시 : 포상.교육훈련.승진, 금전적 지원 등

ⓕ 직원들의 지식 활동이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는가?
※ 지식관리시스템이나 연구모임에서 어떤 직원이 업무개선을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개선안이 구체화되어 실제로 개선 실적으로 이어진 사례 등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문이나 메모보고 등 근거 제출 (제안 내용 화면 캡처, 포상 사유, 개선실적 언론 보도 등 포함 권장)

- 탁월(5점) :「2017년 대한민국 지식대상」수상기관, 또는 ⓐ~ⓕ 평가요소 중 6개를 충족한 기관
- 우수(4점) : ⓐ~ⓕ 평가요소 중 4~5개를 충족한 기관
- 보통(2점) : ⓐ~ⓕ 평가요소 중 2~3개를 충족한 기관
- 미흡(1점) : ⓐ~ⓕ 평가요소 중 1개 이하를 충족한 기관

※ 국방부, 경찰청 등 폐쇄망 기관은 평가요소 ⓓ항을 충족하였다고 간주

<평가요소 정량 평가 설명>

- ⓐ : 기관 자체 지식행정 활성화계획 수립 여부
- ⓑ : 지식행정과 관련한 조직과 역할(담당자)이 명시된 문서 또는 메모보고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제시 여부
- ⓒ : 기관 KMS, 온-나라 표준 KMS 또는 기관 업무포털에서 지식공유나 업무개선, 제안·토론 게시판 등 기관별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여부

평가지표	2. 국민 소통·협업(17점)

- ⓓ : 기관 KMS나 업무포털에 '온-나라 지식'으로 연결되는 링크 존재 유무
- ⓔ : 유용한 지식을 게시하거나 연구모임활동 등 지식활동을 잘 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 여부
- ⓕ : 제안이 채택되어 실행되는 등 직원들의 지식활동이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 사례 존재 유무
- 측정 기간 : 2017.1.1. ~ 2017.12.31.

○ 제출서류 : ① 기관별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

※ 등록경로: 온-나라 지식(www.on-nara.go.kr) > 커뮤니티 > 범정부 지식행정 공유마당 > 게시판/자료실 > 2017년 활성화 계획 > 등록

② 기관별 추진 실적

※ 각 항목의 실행 여부 증빙자료는 원칙적으로 공문이나 메모보고 등 공식적 자료로 제출

② 정책실명제 운영의 충실성

○ **평가지표 개요**

- 기관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완료사업의 사업관리이력서와 진행사업의 사업내역서 등록 실적을 평가(**3점**)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충실하게 개최하였는지를 평가(**1점**)
- 정책실명제에 대한 자체 홍보 노력도 평가(**1점**)

○ **측정방법(정량지표)**

-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률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정책실명제 자체 홍보 실적

○ **세부 측정기준**

① 사업관리이력서(완료사업) 및 사업내역서(진행사업) 등록률(**3점**)

- 등록 건수(사업관리이력서 + 사업내역서) / 등록대상 건수

평가지표	2. 국민 소통·협업(17점)

구분	등록률(%)	점수
탁월	98이상	3
우수	95~97	2
보통	90~94	1
미흡	89이하	0.5

②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1점**)

- 대면회의(**1점**), 서면회의(**0.5점**) 미개최(**0점**)

③ 정책실명제 자체 홍보 실적(**1점**)

- 중앙·지역 일간지·TV(**1점**), 기타 홈페이지·블로그 등(**0.5점**), 미홍보(**0점**)

○ **제출서류**

- 중점관리 대상사업·사업이력서·사업관리이력서 목록과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 코너」 등록 증빙자료(화면 캡처)
-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공문과 결과보고서
- 정책실명제 자체 홍보실적 증빙자료

③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국민 소통·협업 정도(2점)

□ 지표 개요

○ 정책의제설정, 결정, 집행 등 정책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디자인단의 활성화 정도를 정량평가

□ 측정기준

가. '국민디자인과제 추진계획' 수립 여부(1점)

* 수립 1점, 미 수립 0점

나.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활용한 국민디자인과제 추진 이력 관리(1점)

* 이행 1점, 미 이행 0점

평가지표	2. 국민 소통·협업(17점)

④ 국민 소통·협업을 통한 정책 개선(5점)

□ 지표 개요

○ 정책의 투명성, 민주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책 추진 시 국민과 소통·협업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정량 및 정성평가

□ 측정기준

가. (정량평가) 2017년 국민제안을 채택·실시해 정책을 개선한 실적(1점)

* 존재 1점, 미 존재 0점

나. (정량평가) 국민 소통·협업 우수사례 관련 정부부처 경진대회 수상 여부(1점)

* 수상 1점, 미 수상 0점

다. (정성평가) 국민 소통·협업 우수사례 2건(3점)

등 급		우수	보통
배점	사례 1	1.5	1.0
	사례 2	1.5	1.0

* 2건의 사례를 각각 평가한 후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평가점수 산정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측정방법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3점)

* 연간 1인당 평균 국정과제(정부 3.0, 창조경제, 통합과 갈등관리, 공직가치, 규제개혁)교육 이수시간 = 4급이하 현원의 총 교육이수 시간 합계 / 4급 이하 현원

구 분	점 수
연간 1인 평균 7시간 이상	3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 7시간 미만	2점
연간 1인 평균 5시간 미만	1점
실적없음	0점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6점)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3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3점	2점	1점	0점

나. 초과근무 감축 실적(3점)

* '16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감축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구 분	10% 이상	7% 이상~ 10% 미만	4% 이상~ 7% 미만	1% 이상~ 4% 미만	1%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점

※ '15년도 대비 '16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을 10% 이상 감축한 기관 또는 '16년도 1인당 초과근무 실적이 월 25시간 미만인 기관의 경우 0.5점 가점 부여(2.5점 이하인 기관만 해당)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2점)

* 연간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평가 후 배점 적용

등 급	90% 이상	80%~90% 미만	70~80% 미만	60~70% 미만	50~60% 미만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3점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7점)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4.5점)

* 평가요소(교류직위비율, 인센티브부여, 특별추진노력)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80점 이상	60점~ 80점 미만	40점~ 60점 미만	20점~ 40점 미만	2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4.5점	2.5점	1.5점	1점	0.5점	0점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 부처 정원의 70% 이상이 특정직, 공안직 등으로 구성되어 현실적으로 교류가 곤란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성과(2.5점)

* 평가요소(개방형 및 공모직위 모집·선발·임용의 적절성) 점수 합계(100점 만점)

구 분	90점 이상	80점~ 90점 미만	70점~ 80점 미만	60점~ 70점 미만	60점 미만	실적 없음
배 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지원(5점)

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확대(3점)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실적에 따라 점수부여

등 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 점	3점	2점	1점	0점

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실적(2점)

* 시간선택제 수요 배점 대비 제출 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등 급	100% 이상	100% 미만~ 50% 초과	50% 이하	실적없음

<선택지표> 3개 지표중 2개 이상 자율적으로 선택

⑥ 상시학습 이수비율(3점)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구 분	93% 이상	83%~93% 미만	73%~83% 미만	63%~73% 미만	63%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점	0.5점

⑦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2점)

등 급	우수	보통	미흡	실적없음
배 점	2점	1.5점	1점	0점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⑧ 전문직위 지정 비율(2점)

* 기관별 전문직위 지정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본부기준)

배 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실 적	16% 이상	13% 이상 ~16% 미만	10% 이상 ~13% 미만	5% 이상 ~10% 미만	5% 미만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실적

- 정부 3.0, 창조경제, 통합과 갈등관리, 공직가치, 규제개혁 교육 이수 실적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사이버 포함), 부처 직장교육, 민간위탁 교육, 워크숍 등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포함)의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4급 이하 현원
  = ∑(4급 이하 교육참석인원 * 교육시간)/4급 이하 현원

②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노력

가. 유연근무제 이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평가요소 >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및 이용현황 보고여부 :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계획,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연 2회) 등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

ⓑ 유연근무제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이상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 자율목표 최소기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이상으로 설정
  ※ 전년도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전체 22% 이상
- 유연근무제 12일 이상 실시 인원 / 총현원*('17.12.31.기준)
  * 현업·교대근무자 및 실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간부진 유연근무제 이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이상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 자율목표 최소기준
- 전년도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이상으로 설정
  ※ 전년도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간부급 유연근무제 이용 비율이 20% 이상
- 4급 이상(복수직급) 간부진의 유연근무제 12일 이상 실시인원/ 4급 이상 간부진 현원('17.12.31 기준)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 평가기준 >

· 우　　수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　　통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　　흡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초과근무 감축 실적

· 3점 : '16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10% 이상 감축

· 2.5점 : '16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7% 이상~10% 미만 감축

· 2점 : '16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4% 이상~7% 미만 감축

· 1점 : '16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1% 이상~4% 미만 감축

· 0점 : '16년도 1인당 월 초과근무 실적 대비 1% 미만 감축

③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 기관별 연간 필수보직기간 준수 실적을 평가

< 평가기준 >

- 2점 : '17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90% 이상
- 1.5점 : '17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80% 이상 90% 미만
- 1점 : '17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70% 이상 80% 미만
- 0.5점 : '17년 필수보직기간 준수 비율 평가 후 60% 이상 70% 미만
- 0.3점 : '17년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평가 후 50% 이상 60% 미만

④ 외부와의 임용·교류 실적

가. 인사교류제도 운영 성과

- 계획인사교류 비율(70점) : 2017년 정원대비 계획인사교류 비율을 7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정원 : 전체 고위공무원~7급 중 전문직위 등 교류가 곤란한 인원 제외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 인사인센티브 부여(20점) : (인사 · 재정상 인센티브 부여인원 /전체교류인원)×20 - 특별추진노력(10점) : 전략교류, 인사·법제·전산 등 전문분야 교류실적(* 한 가지라도 해당시 점수 부여) **나. 개방형 및 공모직위 운영 성과** - 경력개방형 직위 지정비율(10점), 공모 직위 외부인사(타부처) 응모 여부(10점), 선발심사위원회 외부위원 1/2이상 위촉 등 선발심사의 적절성 여부(30점), 민간인, 타부처 등 외부인사 임용 여부(50점) (* 공모직위의 인사교류직위는 단계적 만점) **⑤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3점)** **<배점기준>** - 매우우수(3점)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하고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한 경우 - 우수(2점)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달성한 경우 - 보통(1점)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미달하였으나, 전년대비 실적이 향상된 경우 - 미흡(0점) :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를 미달한 경우 **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실적(2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요 배점 대비 제출실적에 따라 점수 부여 **<배점기준>** - 2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요배점 대비 제출 실적 100% 이상 - 1.5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요배점 대비 제출 실적 100% 미만~50% 초과 - 1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요배점 대비 제출 실적 50% 이하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 0점 : 실적없음

⑥ 상시학습 이수 비율

- 평가대상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제외), 연구사·지도사 포함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비율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이상 이수자 수/4급 이하 현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연간 상시학습 기준시간 : '17년 부처별 상시학습 기준시간

⑦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 노력도

< 평가요소 >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작성여부 : 연가사용 활성화 추진계획, 연가 이용현황(연 2회) 등을 수립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 연가사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전년도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실적(반올림하여 일단위로 계산) 이상으로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 자율목표 최소기준
- 전년도 평균 연가 이용 실적 이상으로 목표 설정
-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 / 1인당 평균 연가 일수(연가가산일수 포함)
※ 전년도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가 10일 이상

ⓒ 간부진 연가사용 자율목표 달성여부 : 4급(복수직급) 이상 간부진의 연가사용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는지 여부

• 자율목표 최소기준 : 전년도 실적 이상으로 목표 설정하되, 전년도 이용 실적이 없는 기관은 10일 이상 목표 설정

< 평가기준 >

· 우　　수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보　　통 : ⓐ~ⓒ 평가요소 중 2개를 충족하는 경우

· 미　　흡 : ⓐ~ⓒ 평가요소 중 1개를 충족하는 경우

· 실적없음 : ⓐ~ⓒ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부지표	3. 효율적인 정부 인사운영 (30점)
	⑧ 전문직위 지정 비율 - 기관별 전문직위수/ 전체 직위수 X 100(본부기준) ※ 전체 직위수 : 정무직, 별정직,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연구지도직, 개방형/공모 직위를 제외한 총 본부 정원수 <배점기준> - 2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6% 이상 - 1.5점 : 전제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3% 이상 16% 미만 - 1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10% 이상 13% 미만 - 0.5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5% 이상 10% 미만 - 0점 : 전체 직위수 중 전문직위 지정 비율 5% 미만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측정방법

① 효율적인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0점)

가.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3점)

○ 기관별 2017년도 EA 성숙도 모델*을 활용하여 자체측정 후 전문가 점검을 통한 수준진단

* 성숙도 모델 중 자원관리 및 정보화관리체계 영역의 수준(평균)을 평가에 적용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	5.0 이하 ~ 4.5 이상	4.5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3.5 이상	3.5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점수	3점	2.5점	2점	1.5점	1점	0.5점	0점

나. 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 수준(4점)

○ (대상) 기관에서 기획 및 계획을 수립한 정보화사업

○ (방법) 자체진단* 및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수준 측정모델을 활용

**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자체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절차 및 일정) '17. 1월 ~ 12월

사전설명회 (3월)	⇒	점검 및 결과통지 (9월 ~ 11월)	⇒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 및 결과확정 (11~12월)

*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은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기관에 한함

다. 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수준(3점)

○ (대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중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44호)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시스템

○ (방법) 자체진단* 및 자체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점검**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지침 및 매뉴얼

**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자체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절차 및 일정) '17. 1월 ~ 12월

사전설명회 (3월)	⇒	점검 및 결과통지 (9월 ~ 11월)	⇒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 및 결과확정 (11~12월)

* 기관별 검토의견 제출은 점검결과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기관에 한함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②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확립(4점)

가.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2점)

○ '17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총량 조사" 결과를 활용

- 해당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총량제 조사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평가

지표	점수			
①총량감축률	10%이상	5~10%	1~5%	1%미만
	1	0.7	0.3	0
②웹사이트 관리 노력도	세부항목 중 3개	세부항목 중 2개	세부항목 중 1개	세부항목 중 0개
	1	0.8	0.5	0

* 전년도 총량은 지정 총량을 의미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2점)

○ '17년 "행정·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및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측정지표 활용

구분	90점 이상	85~90점 미만	80~85점 미만	80점 미만
웹 호환성	1.5	1.1	0.7	0.3
웹 접근성	0.5	0.4	0.3	0.2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가 유효한 웹 사이트는 웹접근성 진단결과에 가점(+5) 부여하고, 진단 기간중 품질마크 인증이 획득했을 경우도 가점(+5) 부여

③ 영상회의 활성화(2점) /공통

<table>
<tr><th>지표</th><th>점수</th><th>점수부여기준 및 평가방법</th></tr>
<tr><td>회의 지정 부문</td><td>0.7점</td><td>○ 영상회의 이용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의 핵심업무* 수(0.4)
<table>
<tr><th>구분</th><th>4건 이상</th><th>3건</th><th>2건</th><th>1건</th></tr>
<tr><td>배점</td><td>0.4</td><td>0.3</td><td>0.2</td><td>0.1</td></tr>
</table>
* 기관고유 업무, 기관간 협의・조정 업무
○ 영상회의 이용대상 회의지정 건수*(0.3)
<table>
<tr><th>구분</th><th>5건이상</th><th>3건</th><th>1건</th></tr>
<tr><td>배점</td><td>0.3</td><td>0.2</td><td>0.1</td></tr>
</table>
* 지정회의수 / 본부(청) 실・국수</td></tr>
</table>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table>
<tr><th>지표</th><th>점수</th><th>점수부여기준 및 평가방법</th></tr>
<tr><td>실적
부분</td><td>0.8점</td><td>○ 핵심업무 개최실적(0.3)
<table><tr><th>구분</th><th>70% 이상</th><th>50%이상</th><th>30%이상</th></tr><tr><td>배점</td><td>0.3</td><td>0.2</td><td>0.1</td></tr></table>* 핵심업무 영상회의 개최 총수/ 핵심업무 년 간 회의 총수
○ 부서평균* 영상회의 개최 건수(0.3)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부서평균* 건수</th></tr><tr><th>60건 이상</th><th>~40건</th><th>~20건</th></tr><tr><td>배점</td><td>0.3</td><td>0.2</td><td>0.1</td></tr></table>* 전체(지정+기타) 영상회의 개최건수 / (본부(청) 부서수+소속기관수)
○ 지정회의 개최실적(0.2)
<table><tr><th>구분</th><th>80% 이상</th><th>~50%</th></tr><tr><td>배점</td><td>0.2</td><td>0.1</td></tr></table>* 지정회의 목표율(80%) 달성 회의수 / 전체 지정회의 수</td></tr>
<tr><td>추가
가·감점</td><td>점수
한도내</td><td>○ 이행도 평가(±0.5) : 계획 대비 적극적 이행정도 평가
- (가점) 주재자 실국장급 이상 40% 이상 또는 기관 간 60%이상, 또는 영상회의실 공통기반 연계*
*1개 회의실 연계별 +0.1점, 최대 +0.5점
- (감점) 지정회의 개최실적 0% 또는 200%초과, 핵심업무 미지정 등 소극적 목표치 설정 및 활성화 노력
○ 우수사례 선정 기관 0.5점</td></tr>
</table>

<선택지표> 2개 지표 중 1개 이상 자율적으로 선택

④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도입 실적(2점)

○ **업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율(1.8점)**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업무시스템 중 클라우드 도입 시스템의 비율

클라우드 전환율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20% 미만
점수	1.8	1.2	0.6	0

○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규 업무시스템 구축(0.2점)**

-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 신규 업무시스템 당 0.1점씩 부여하며, 최대 0.2점까지 부여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2건 이상	1건	없음
점수	0.2	0.1	0

※ 전체 업무시스템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스크탑 가상화 등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 효율향상을 위해 기관에서 자체 도입한 시스템도 평가대상에 포함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률(2점)

지표	점수	점수부여기준 및 평가방법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률	2점	○ 정보화사업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률 - 당해년도 부처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상 사업유형이 구축비(초기/추가)로 분류된 사업에서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시스템 비율 적용률: 100% ~ 80% 이상 / 80% 미만 ~ 60% 이상 / 60% 미만 ~ 40% 이상 / 40% 미만 ~ 20% 이상 / 20% 미만 ~ 0% 초과 / 0% 점수: 2점 / 1.6점 / 1.2점 / 0.8점 / 0.4점 / 0점 ※ 단, 부처별 적용 시스템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점수의 80%만 인정
추가 가점	최대 1점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전환 개발 -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프레임워크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전환하는 경우~~ 미적용 시스템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프레임워크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전화하는 경우 시스템 당 0.2점 가점 부여 ※ 기존 프레임워크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개발업체 보유 프레임워크인 Anyframe, Systemier, LAF/J, JGarnet 등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효율적인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마련(10점)

가.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3점)

○ 평가 요소

- 2017년도 기관의 EA 성숙도 측정 결과 중 자원관리 영역 및 정보화관리체계 영역의 수준(평균)을 평가에 반영

영역	영역별 정의
자원관리	기관별 정보자원의 연계·통합 및 공동 활용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통정보 (기준정보) 관리, 연계 및 유관정보에 대한 관리 등의 품질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정보화 관리체계	정보자원 현황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구축된 정보자원의 운영·활용을 위한 역량확보 수준을 1단계 ~ 5단계로 측정

- 4.5~5.0 : EA 성숙도 수준이 최적화됨
- 4.0~4.5 : (확산) EA 성숙도 수준이 전 기관(소속산하기관포함)에 일정수준 이상 확보
- 3.0~4.0 : (관리) EA 성숙도 수준 제고에 따른 성과 창출
- 2.0~3.0 : (정의) EA 성숙도 수준을 위한 체계 및 품질확보
- 1.0~2.0 : (수행) EA 성숙도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역할 정의
- ~1.0 : (인지) EA 성숙도 수준 제고 필요성 인지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 **평가 기준 및 산식**

-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 산식

  : {(자원관리 영역수준)+(정보화관리체계 영역수준)} / 2

※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수준(0.0~5.0)'을 평가 반영 점수(0.0~3.0)로 환산

나. 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 수준(4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정보화 기획 및 예산 수립 단계에서 사전협의 등 사전 타당성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이행·점검 여부 등 정보화 투자관리 수준을 측정
- 기관별 수준은 총 4단계로 구성하며, 각 단계별 질의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문서 등에 의한 세부 영역별 수준을 측정

※ 소속·산하기관 관리수준을 포함하여 측정하되,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출연·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영역	영역별 정의
효율적 정보화추진 영역	기획, 예산, 사업추진 단계별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의 사전검토 및 이에 따른 이행관리 수준
정보화 투자관리 영역	정보화 투자관리를 위한 계획 및 기준·절차 수립, 정보화 투자 환류체계 정립 등 각 기관 정보화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의 투자관리 수준

○ **평가 기준 및 산식**

- 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 수준(4점)

※ 산식 : (효율적 정보화추진 영역 + 정보화 투자관리 영역) / 2

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수준	~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3.5미만	3.5이상~4.0미만
점수	0점	1점	2점	3점	4점

▪ 3.5~4.0 : (최적화)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 수준이 최적화됨

▪ 3.0~3.5 : (확산) 정보화 투자관리에 따른 성과 창출

▪ 2.0~3.0 : (관리)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 수준이 전 기관(소속·산하기관포함)에 일정수준 이상 확보

▪ 1.0~2.0 : (정의)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및 품질확보

▪ ~1.0 : (인지)정보화기획 및 투자관리 필요성 인지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다. 정보화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수준(3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정보화사업 이행을 통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관리(계획수립, 항목별 성과측정,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이행 및 조치계획 수립 등) 수준을 평가

○ **평가 기준 및 산식**

- 계획수립(0.5점)
  - 기관별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성과측정 계획 수립 여부 = (운영성과측정계획을 수립한 정보시스템 수/운영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 수)×100%
- 성과측정(2점)
  - 운영성과측정 이행률(1점) = (운영성과측정을 완료한 정보시스템 수/운영성과측정 대상 시스템수)×100%
  - 정보시스템 기능 활용률(0.3점) = 운영성과를 측정한 정보시스템별 기능활용도 지표값의 평균
  - 목표 대비 성과달성률(0.4점) = 운영성과를 측정한 정보시스템별 목표대비성과달성률 지표값의 평균
  -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0.3점) = 운영성과를 측정한 정보시스템별 사용자만족도 지표값의 평균
- 이행 및 이행계획 수립(0.5점)
  - 기관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및 조치완료 여부(0.5점)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 수립 시스템 수/운영성과측정결과에 따른 추가조치 필요 시스템 수) ×100%

② 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확립(4점)

가.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2점)

○ **평가 요소**

-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 : 기관의 웹사이트 총량 및 감축률 이행을 통해 국민의 정보 검색·접근 편의 및 효율적 정보자원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공공 웹사이트 운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웹사이트 총량 감축률, 웹사이트 관리노력 영역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영역	영역별 정의
총량 감축률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방안에 의거하여 웹사이트 통·폐합 등을 통해 각 기관별로 지정된 웹사이트 총량에서 매년 10% 수준의 감축률을 이행하여 기관별 웹사이트 총량을 준수했는지 측정
웹사이트 관리노력도	웹사이트의 정비, 운영관리 강화 등을 위해 웹사이트 운영현황을 지속을 관리하고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웹사이트 총량 관리체계 여부를 측정

○ **평가 대상**

- 행정·공공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

○ **진단 결과**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7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수준' 점검 결과물 이용

○ **평가산식**

- 해당부처 및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총량제 조사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웹사이트 관리방안 이행 수준을 평가

지표	점수			
①총량감축률	10%이상	5~10%	1~5%	1%미만
	1	0.7	0.3	0
②웹사이트 관리 노력도	세부항목 중 3개	세부항목 중 2개	세부항목 중 1개	세부항목 중 0개
	1	0.7	0.3	0

▪ 웹사이트 총량감축률: (웹사이트 폐기/웹사이트 총량 × 100%) + (웹사이트 통합/웹사이트 총량 × 50%)

※ 총량감축 실적은 '16년에 제출하여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부분 중 10%를 초과한 부분을 실적에 반영하여 평가

▪ 웹사이트 관리노력도 세부항목

a. 웹사이트 관리개선 이행 추진력 확보(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만족 시 인정): ① 관리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② 추진근거(관련 규정 지침 제·개정) 마련, ③ 관리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b. 웹사이트 운영관리실적: 운영 중인 웹사이트(80%이상)의 이용자 현황 분석, 품질관리(게시판 관리, 정보 현행화, Bad Link점검 등), 접근성·호환성 자체점검 등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상하반기 보고(실국장 이상)

c. 웹사이트 총량제 관리실적: '17년도 추진계획 수립, 공공기관 총량제 감축실적 점검결과, 총량제 및 웹사이트 관리 교육(공공기관 포함)

※ 산하 공공기관이 없는 경우 세부항목 2개 달성시 1점, 1개 달성시 0.7점 부여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나.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2점)

○ **평가 요소**

- 기관별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과 웹 접근성 수준진단

○ **평가 대상**

- 각 2개(기관대표(50%) + 서비스(50%)) 웹사이트의 페이지 ①메인페이지, ②서브페이지(메인페이지의 하위 1,2단계 페이지), ③목록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④부가기능 페이지(동영상, 플래시 등 멀티미디어 페이지), ⑤ActiveX(키보드 보안, 개인방화벽, 데이터 암호화 등) 사용정도 등 7~10페이지

  ※ 서비스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총량대상에서 무작위 선정

○ **진단결과**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7년 '행정·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의 결과물 이용

○ **평가산식**

-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17년 행정기관·공공기관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수준진단' 결과 값을 이용

구분	90점 이상	85~90점 미만	80~85점 미만	0점 미만
웹 호환성	1.5	1.1	0.7	0.3
웹 접근성	0.5	0.4	0.3	0.2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가 유효한 웹 사이트는 웹접근성 진단결과에 가점(+5) 부여하고, 진단 기간중 품질마크 인증이 획득했을 경우도 가점(+5) 부여

③ 영상회의 활용 활성화(2점)

○ **평가 요소**

- 핵심업무 운영, 개최실적, 기관간 여부, 이행정도 및 우수기관 등

○ **평가 대상**

- 각급 기관의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 정기적 개최실적 등

○ **평가 산식**

-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고, 2점 이상이면 2점으로 인정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④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도입 실적(2점)

○ **평가 요소**

- 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도입 실적 :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업무용 정보시스템 중 클라우드 도입 시스템의 비율과 클라우드 기반의 신규 업무시스템 도입을 추가가점으로 평가

○ **평가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용 정보시스템

○ **진단 방법**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G-클라우드 자원할당 신청서, 통합전산센터의 G-클라우드 수요현황 조사 및 전환결과, 사업계획서 등을 검증에 활용

○ **평가 산식**

- **총점 = 업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율 점수 + 클라우드 기반 신규 업무시스템 구축 점수**

※ 전체 업무시스템은 범정부EA포털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데스크탑 가상화 등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 효율향상을 위해 기관에서 자체 도입한 시스템도 평가대상에 포함

- 업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율(1.8점)

• 지표산식 = (클라우드 전환 업무시스템 수) / (전체 업무시스템 수) * 100(%)

클라우드 전환율	60% 이상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20% 미만
점수	1.8	1.2	0.6	0

- 클라우드 기반 신규 업무시스템 구축(0.2점)

• 신규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 건수 당 0.1점씩 부여하며, 최대 0.2점까지 ~~가~~점부여

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률(2점)

○ **평가 요소**

- 국가정보화사업의 시스템 구축 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비율을 평가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 **평가 대상**

- 당해년도 부처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상 사업유형이 구축비(초기/추가)로 분류된 사업 중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만 해당

사업유형	정의	평가 대상
구축비(초기)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비(FP)	O
	○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X
	○ 네트워크 환경 구축비	X
	○ 전산실 등 운영 인프라 초기 구축비	X
	○ DB 입력비 등	X
구축비(추가)	○ 신규 기능의 추가, 기존 기능의 변경 등 개발비용	O
	○ 외부 시스템 연계기능 구축비	O
	○ 새로운 환경(예; OS 변경 등) 적응을 위한 SW 이전 및 데이터 전환 비용	X
	○ OS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유상 업데이트 및 증설 비용	X
	○ 시스템 오류 수정에 따른 장비(모듈) 교체 등 직접경비	X
	○ DB 추가 구축비	X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중 평가제외 대상

- 웹 기반 시스템이 아닌 C/S(Client/Server) 구조인 경우
- PHP, .NET 등 자바 이외의 언어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경우
- 전문 솔루션(ERP 등)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하여 구축하는 경우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예산 총괄기관(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각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심의를 통해 작성·제출한 사업 중,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정보화사업(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국가DB사업, U-서비스사업 등)도 포함

○ **진단 방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부 고시 제2015-88호, 2015.11.9.),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자부 고시 제2016-48호, 2016.12.26.)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에 의거 제안요청서의 기술적용계획표 상에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여부 확인

○ **평가 산식**

- 당해년도 부처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상 사업유형이 구축비(초기/추가)로 분류된 사업에서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시스템 비율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시스템 수) / (평가 대상사업 시스템 수) * 100

※ 단, 부처별 적용 시스템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점수의 80%만 인정

평가지표	4.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20점)

○ **평가 기준**

- 국가정보화사업 표준프레임워크 적용률

· 당해년도 부처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상 사업유형이 구축비(초기/추가)로 분류된 사업에서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시스템 비율

적용률	100% ~ 80% 이상	80% 미만 ~ 60% 이상	6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0% 초과	0%
점수	2점	1.6점	1.2점	0.8점	0.4점	0점

- 표준프레임워크 전환 개발 (추가가점)

·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프레임워크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로 전환하는 경우 시스템 당 0.2점 가점 부여

※ 단, 전환 시스템 수에 관계없이 추가가점은 최대 1점까지만 부여

평가지표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

측정방법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4점)

○ 평가 산식

-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진단 결과(100점 만점) × 4 / 100

○ 평가요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관별 기본적인 **관리체계 구축 여부 및 침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3개 분야 12개 지표**)

분야	가중치				12개 지표(24개 항목)	비고
관리체계 구축 (30점)	5		7		1. 개인정보보호 기반마련(2)	
	12		-		2.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2)	
	5		10		3.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2)	
	8		13		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 수행(2)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30점)	5	9	7	15	5. 개인정보 수집(2)	
	9	12	11	15	6.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 운영(2)	
	10	-	12	-	7.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2)	
	6	9	-	-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2)	
침해사고 대책 (40점)	10	15	12	25	9. 개인정보 유·노출방지 조치 및 자율 개선(2)	
	10	15	12	15	10.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2)	
	14	-	16	-	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한 이용 및 관리(2)	
	6	10	-	-	1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2)	

※ 2, 7, 8, 11, 12번 지표 비대상 기관은 해당 지표 점수를 동일 분야 타 지표에 균등 분배한 가중치 적용

평가지표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4점)

○ 5개 해당 지표별 점수의 합 * 4/100

- SW 개발보안 준수율, SW개발보안교육 이수실적, 웹취약점 개선 조치율,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측정방법

지표	설명
SW 개발보안 준수율 (20)	o **기관별 SW개발보안제도 준수율 (20)** . **(대상)** '17.1월 이후 추진된 신규개발 정보화 사업(감리대상) . **(방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SW 개발보안 적용여부 확인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감리대상 정보화사업 추진시 SW 개발보안 의무 적용. 그 외는 자율 추진 . (**산식**) 아래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산
SW개발보안 교육 이수실적 (10)	o **전산직 및 정보화사업 관련 담당자의 SW개발보안 교육 이수실적(10)** . **(대상)** 전산직 5급 이하 및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타직렬* 5급 이하 담당자 * 개발사업 또는 운영중인 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보수 용역 검수/검사자 또는 사업관리담당자 . **(방법)**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SW개발보안교육 이수자 비율 - 교육명 : SW개발보안 일반과정, SW개발보안 심화과정, SW보안약점 진단원 양성과정, 특별교육(실시할 경우 별도 공지) (**산식**) ('15~'17년 SW개발보안교육 이수자(명) / '17.11월 기준 기관 전체 5급 이하 전산직 현원(명)) * 100

점검항목	점수
개발사업 RFP에 SW개발보안 적용 명시 여부	5
감리사업 RFP에 SW개발보안 진단 명시 여부	5
개발사업 완료보고서에 SW개발보안 적용상세사항 명시	5
감리사업 최종보고서에 'SW보안약점 진단원'에 의한 SW 개발보안 점검결과 명시	5
SW개발보안 의무화 대상 외, 기타 보안컨설팅, 진단원 별도 투입 등으로 SW보안약점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한 경우	+5 (가점)

※ 해당하는 사업이 없는 경우는 15점 부여, 가점은 배점(20점)내에서 부여

교육이수율	점수
80% 이상	10점
80% ~ 70% 미만	8점
70% ~ 60% 미만	6점
60% ~ 50% 미만	4점
50% 미만	2점

※ 홈페이지: academy.kisa.or.kr/main.kisa(한국인터넷진흥원)

평가지표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	
측정방법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50)	**o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50)** = 통합센터의 웹 취약점 점검 결과 대한 개선 조치율 (30) + 기관 자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20)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웹 취약점 점검 결과 (30)** · 통합센터에 입주한 시스템 대상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17.11월말 기준) · 통합센터 미 입주기관은 '기관자체 웹 취약점결과'를 5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산식)** 웹 취약점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 ① 이행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 '17.11월 말 기준으로 통합센터로부터 취약점 이행점검결과 자료협조 예정(피평가 기관으로부터 증적자료 제출받지 않음) ② 웹 취약점 조치율별 해당 점수
		웹 취약점 조치율 / 점수 95% 이상 / 30점 80% ~ 95% 미만 / 24점 60% ~ 80% 미만 / 18점 50% ~ 60% 미만 / 12점 50% 미만 / 6점
	웹 취약점 개선 조치율 (50)	**– 기관 자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 (20)** · 행자부 '웹 표준 점검항목'(21개)를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함 · 센터 미입주 시스템 중 2개 이상 시스템에 대한 웹 취약점 점검/조치결과 제출 . (**산식**) 웹 취약점 조치율에 해당하는 점수 ① 이행점검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초기진단 시 발견된 취약점 개수 * 100 ② 웹 취약점 조치율별 해당 점수
		웹 취약점 조치율 / 점수 95% 이상 / 20점 80% ~ 95% 미만 / 16점 60% ~ 80% 미만 / 12점 50% ~ 60% 미만 / 8점 50% 미만 / 4점
		※ 1개 서비스만 실시하였을 경우 점수의 50%만 반영, 기관자체 웹 취약점 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4점 반영 ※ 센터 미입주 시스템이 없는 경우도 기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① 센터에서 '17년 웹취약점을 점검하지 않은 시스템 2개 이상 ② 센터에서 기관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였을 경우,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웹 취약점 점검 결과(30)'를 5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10)	**o 대민서비스 관리자, 시스템SW 관리자 패스워드 주기적 변경 (10)** . **(대상)** 대민서비스 관리자 계정과 대민서비스 관련 시스템SW (DB/WEB/WAS, 정보보호SW, 백업SW 등)의 관리자 계정* * 시스템관리자가 사용하는 Admin계정, 예시> OracleDB : sys, system, WAS : deploy 시 사용하는 계정, 백업SW : 백업스케줄 생성가능한 계정 등 . (산식) 패스워드 준수율(①)에 해당하는 점수(②)

<table>
<tr><td>평가지표</td><td>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td></tr>
<tr><td>측정방법</td><td>
<table>
<tr><td></td><td>① (시스템별 준수항목 수의 합) / (시스템 수 * 점검항목 수(3개)) * 100
※ 시스템 수는 DB, WEB, WAS, 정보보호시스템, 백업SW 등을 각각 1개로 계산
※ 인정되는 제출자료 : 관리대장, 유지보수 보고서 발췌, 통합센터에서 담당할 경우 담당자 메일, 권한관리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화면덤프
<table>
<tr><th>점검항목</th></tr>
<tr><td>응용SW 초기 기본(default)패스워드 변경</td></tr>
<tr><td>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패스워드 설정</td></tr>
<tr><td>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td></tr>
</table>
② 패스워드 준수율별 해당점수
<table>
<tr><th>웹 취약점 조치율</th><th>점수</th></tr>
<tr><td>95% 이상</td><td>10점</td></tr>
<tr><td>80% ~ 95% 미만</td><td>8점</td></tr>
<tr><td>60% ~ 80% 미만</td><td>6점</td></tr>
<tr><td>50% ~ 60% 미만</td><td>4점</td></tr>
<tr><td>50% 미만</td><td>2점</td></tr>
</table>
</td></tr>
<tr><td>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10)</td><td>o 대민서비스 관리자 접근권한 적정성을 주기적 검토 (5)
: 직무변경된 접근권한을 삭제(관리자 권한회수 등)하지 않았을 경우 0점, 분기 1회 = 5점, 반기 1회 = 3점
※ 인정되는 제출자료 : 관리대장, 유지보수 보고서 발췌, 통합센터에서 담당할 경우 담당자 메일, 권한관리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 화면덤프
o 대민서비스 접근기록 주기적 점검 (5)
: 접근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 5점,
접근기록을 6개월 미만 보관 또는 반기 1회 이상 점검 = 3점,
그 외 0점
* 홈페이지 등에 조회, 로그인 등 서비스사용자의 IP등 로그기록</td></tr>
</table>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6점)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3점)

○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관리, 인적보안 수준을 측정한 국정원 주관 2017년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나. 사이버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3점)

○ 사이버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수준을 측정한 국정원 주관 2017년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 반영

④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1점)

○ 해킹메일 대응·모의침투·도상훈련 등 국정원 주관 을지연습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 결과 반영

</td></tr>
</table>

평가지표	5. 사이버안전수준 강화(15점)
측정기준 (착안사항)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 ○ 개인정보관리체계(30), 보호대책수립(30), 침해사고대책(40)에 대한 기관별 실적 평가 후 침해사고 처분횟수에 따른 감점을 반영한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의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4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 5개 해당 지표별 점수의 합 * 4/100 - SW 개발보안 준수율, SW개발보안교육 이수실적, 웹취약점 개선 조치율, 응용SW 관리자 패스워드 관리, 대민서비스 접근권한 검토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가. 관리적 정보보안 수준** ○ 정보보안 정책 수준 ○ 정보자산 보안관리 수준 ○ 인적보안 수준 **나. 사이버 위기관리 및 기술적 정보보안 수준** ○ 사이버 위기관리수준 ○ 전자정보 보안수준 ○ 정보시스템 보안수준 **④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결과** ○ 해킹메일 대응 수준 ○ 전산망 모의침투 대응 수준 ○ 사이버위기 대응(도상훈련) 수준